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2019. 1.



MINISTRY OF ENVIRONMENT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1	제1조(목적)1
제2조(정의) 1 제3조(국가의 책무) 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3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4		
제6조(통합허가)6	제2조(통합허가)6	제3조(사전협의)5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7
		제5조(변경허가 · 신고의 대상) ·······7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8
제7조(허가기준 등)10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10
 제8조(허가배출기준) ·······17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 13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 13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18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 21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2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3조(오염도 측정)27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25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25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27
세14소(개선명령 등)29	제6조(개선기간)	제12조(개선계획서 등)29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31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 · 징수)33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34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37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제출 등)35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38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38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39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39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41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40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 절차) ·······43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43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45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45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46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4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48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48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49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서 등)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51	40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52		
		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54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관리 기준 등)55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56	제24조(조치계획서 등) 56
제22조(허가의 취소 등)57		레이드포/해저되보이 네버지즈) 60
H1227(71717)	M227/71717 H71 E) 60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60
제23조(과징금)60	세23조(박경급 구파 등) ***********************************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62		TIOOT (THE TIOOT HE TIDE T) 00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63
	등)63	제27조(기술작업반)64
		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65
 제25조(식태조사)66	제25조(실태조사)66	제20 조 (최고기0기탑 고0시탑6에 대한 시련) **00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67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6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7조(정보 공개) ···································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69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71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1 제30조(위원장의 직무) 73 제31조(위원회의 운영) 73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절차 등) 73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75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77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88		
제39조(벌칙)89		
제40조(벌칙)90		
제41조(벌칙)91		
제42조(벌칙)91		
제43조(벌칙)92		
제44조(벌칙)92		
제45조(벌칙)92		
제46조(양벌규정)93		
제47조(과태료)93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93	
부칙〈제13603호, 2015.12.22.〉95	부칙 〈제27737호, 2016.12.30.〉95	부칙(제686호, 2016.12.30.)91
부칙〈제14476호, 2016.12.27.〉 103		
부칙〈제14532호, 2017. 1.17.〉 104	부칙〈제27792호, 2017. 1.17.〉 104	
부칙〈제15107호, 2017.11.28.〉 107		부칙(제735호, 2017.12.29.)107
	부칙〈제28583호, 2018. 1.16.〉 107	부칙(제745호, 2018. 1.17.)107
		부칙(제752호, 2018. 3.30.)110
		부칙〈제797호, 2018.12.31.〉111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률 시행령 별표	1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 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 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 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다.「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라.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물환경보전법」제2조제7호의 수질오		
염물질		
바.「악취방지법」제2조제1호의 악취		
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조		
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의 토양		
오염물질		
자.「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휘		
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대		
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 시설		
라.「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		
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마.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제3호의 소음·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페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환경오 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 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17.〉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 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반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	시 행 령	지 행 규 칙 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하여야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 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
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	제5조(변경허가·신고의 대상) ① 「환경오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	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	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각각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2 제3호차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		14)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폐기물관리법」제2
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		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③ 영 별표 3 제1호가목13)에서 "환경부령으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		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이란 「악취
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말한다.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		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		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		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기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분석 결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1. 영 별표 2 제1호·제2호가목 또는 제3호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 · 원료 · 부원료 ·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		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
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2. 영 별표 2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
한다)		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30일 이내
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영 별표 2 제4호가목 · 나목 또는 라목에
⑤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
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부터 3개월 이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4.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다)을 설치 · 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 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
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
⑥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	④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에석시 1구를 접구하여 된 3구 3단에게 세 출하여야 한다.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1. 영 별표 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	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	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	2. 영 별표 3 제2호가목·라목·마목·바목
U UIL TUE IITE I MI		2. 0 Ear 9 (12ar 1 1 1 1 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 영 별표 3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④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 일반현황 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 ·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		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 · 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 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 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2.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 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 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 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 환경부장관은「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6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적용할 것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건강・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각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법 제7조 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 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원보호구역 2.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 책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 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위용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 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 정하게 수립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 ·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 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 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조제6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한다.〈개정 2017.1.17., 2018.10.16.〉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주민의 건강·재산을 보호할수 있다고인정될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할수 없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시행일: 2019.10.17.] 제7조		
제8조(허가배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 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		
기준을 포함한다)		
2.「환경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		
계획에 반영된 환경의 질(質) 목표		
3. 배출시설등을 설치·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		
용 현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
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수준		
③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		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배출기		
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해서는 아		
니 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		
의 판정기준은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및 배		
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률 하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 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 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에만 할 수 있다.	시 행 령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	시 행 규 칙 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계획을 해당 사업자(법 제6조에 따른 허가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그 변경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감독의	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관리 기준 등 관	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 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 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해 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 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 체적인 검토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 하고 모니터링할 것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		
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		
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		
1항·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		
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		
경보전법」		
2.「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제2항		
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 허가 및 변경신고:「소음·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같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변경신고:「물환경보전법」		
4.「악취방지법」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		
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		
고:「악취방지법」		
5.「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변경		
신고:「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및 변경승인·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		
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		
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		
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 하고		
한다. 		
제11조(권리 · 의무의 승계) ① 사업자가 사망		
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		
인 ·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 변경허		
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		
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환가(換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		
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		
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		
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		
조, 제15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		
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		
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		
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		
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배출시설등 중「폐기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 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 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
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
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	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	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른 기간을 말한다.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영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	1. 16.>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니한다.	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기오염물질배출시설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
	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	일까지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단서에 따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6조제3호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따른 배출시설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있다.
제13조(오염도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 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히 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개정 2018. 1. 17.〉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 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 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6.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탄화수소
		7. 수소이온농도
		8.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
		염물질
		9. 소음
		10. 진동
제14조(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	제6조(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	
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	
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려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	야 한다.	
법」제35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29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	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① 법 제14조제1항	제12조(개선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	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
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
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	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	제출하여야 한다.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우
1. 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
2. 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서 및 설계도 각 1부
3.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	서류
는 내용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
4.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	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경우
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인 경우: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	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2. 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3.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적절한지를 확인하고,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 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및 개선 결과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 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 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 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 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단전·단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개선사유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 변경 · 점 검 ·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이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이내에 전자문서 · 팩스 · 전화 또는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 등을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사업자가 개선기간에 개선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조치를 마칠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 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7. 1. 17.〉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 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		
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29조제1		
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		
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7. 1. 17.〉		
1. 기본배출부과금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조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	
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	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같은 호 각 목의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준이내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	경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	
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및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산정기 준은 별표 5와 같다.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 배출량 × 연도 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오염 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14조(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작성·제출등) ① 사업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한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보존한 사업 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 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대기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 16.〉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 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한다) 5.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4항에 따른 공 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 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 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 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н г	나 해 교	II 호바 그 호I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 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다기 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 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 라 부과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이카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이카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 ② 공동방지시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 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 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 17.〉 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2. 「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에 따른 방 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5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 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 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6조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① 환경부 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제9조제2 항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 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 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의 납부를 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	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환경 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 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 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 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거쳐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오 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 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정·조정 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 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 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 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	
	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	
	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	
	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	
	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	
	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	
	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	
	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제	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
	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
	받은 사업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	한다.
	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 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 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 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① 법 제 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이하로 한다. 2. 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인정되는 경우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까지	
	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하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하로 한다.	
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	④ 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밖에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		
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		
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		
을 징수할 수 있다.		
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법 제19조제1 항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 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계, 유속계, 온 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 나. 용수 측정용 및 폐수 측정용 적산유량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 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 의 부착 대상・방법・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積算流量計) 다. 수질자동측정기기(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기기(이하 "측정기기"라한다)별 부착 대상·방법·시기 및 측정 대상·항목·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③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에 부착방법등에 대하여「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은	제18조(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 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2항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5조제5항에따른다.〈개정 2018. 1. 16.〉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① 제19 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 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 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 률 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 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수 있다.		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 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 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서 1부 3.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가측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	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력계의 운영·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제출·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 결과"는 "조치 결과"로 본다.	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자동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자동측정기기를 개선 · 변경 ·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 제20조제 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2.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제21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 서 등) ① 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측정기기를 개선하 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1 호서식의 자체 개선계획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의 제출시 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에 대한 개선사유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에 따른 개선 완료여부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자동측정기기의 교정,청소,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	자동측정기기의 개선·변경·점검·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전화 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자가 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서 "자동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유서를 제출하고 그 측정기기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제출 또는 보완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 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 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 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 를 부착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은 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 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		
리 등)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5조제4항 및「대		
기환경보전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		
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개정 2017. 1. 17.〉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		
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		
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		
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		
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2.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		
영하는 경우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		
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		
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합 로 교육 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조치 기준 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 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 수되어야 하는 사항 나.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 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시 행 령	지행규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등을 반영하여야한다.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관리 기준 등)법 제21조제2항각호에 따른 배출시설등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및 별표 13과 같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 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가.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나.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 각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경우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 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치 를 명하는 경우: 1년 2. 법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오염물 질등의 측정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개월 3. 법 제2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변지 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한 조치를 명하	제24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 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 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경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제출·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결과"는 "조치결과"로 본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 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		
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		
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		
 4.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		
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		
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14.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증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 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 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 · 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 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 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 와 같다.
제23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 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 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 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	제23조(과징금 부과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		
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증지처분		
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 성류를 구파할 수 없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		
우(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		
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챙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 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 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 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 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ㆍ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 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2.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3.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4.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주기를 연장할수 있다.	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		별표 15와 같다.
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		제27조(기술작업반)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
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		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
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		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견을 들어야 한다.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
⑥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		나 위촉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 분야 전문가 2.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ㆍ 공정 전문가 3. 「기술사법」제2조에 따른 기술사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 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5.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③ 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조건, 방법, 융자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 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 2.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등 저감 기법의 현황 4. 오염물질등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최적가용기법 마련 및 기준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 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	
· 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	
	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	
	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7조(정보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제29조(정보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호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 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정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정보를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超	시 행 령 의 구성·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 2.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명하는 사람 1명 4. 환경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	시행규칙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 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이 하에서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 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절차 등) ① 환경 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④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의 공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	지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을 위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	
수 있다.	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	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장관이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으로 한다.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환경부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의 방법·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	
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	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	
	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① 환경 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 경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및 사전협의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 변경허가의 신청 과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 기준 변경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에 관한 업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 정 내용의 통지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 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관한 업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8.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의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업무 13. 제7조(제19조 및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이행보고서, 조치계획서 및 조치이행보고서와 제8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4.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5.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 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 제출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	
	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	
	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	
	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	
	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	
	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환경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① 환경	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 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 2. 배출시설등의 허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3. 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관한 지식·기술을 갖추었을 것 4. 법제2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의수행에 적합한 전담 인력 및 전문 장비를 갖추었을 것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확인·감독하여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배출기준의 검토·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 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서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 업무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제		제31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u> </u>	시 성 경	시 용 ㅠ 긕
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시설 및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검사(이하 "정기
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ㆍ검사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		(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②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		부장관이 정한다.
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1.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여부
조건의 적정성 여부		2.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1.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보존에 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한 사항의 준수 여부		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
준수 여부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 이상 지연·누락된 경우 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	
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3 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 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 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 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 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 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역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히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 검사할 수 있다. ⑥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횡	물질등의 배경우 청이 있거나 생하는 경우 허가를 하거 여 필요하다 · 검사를 하 목적 및 알려 고가 발생하 모 등 건인멸 없다고 인정 나다. 출입·검사를 으로 출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의 출입·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기관을 말한다.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제31조(자가측정)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 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 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등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본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 단서 및「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3. 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이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③ 자가측정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장관이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④ 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2.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2.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수준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계획 4. 그 밖에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 및 해당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 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 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기록·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 한 사항		제34조(기록·보존의 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원료·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위 및 입력 방법·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 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는 별표 17과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5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 대기질 ·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2.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의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마련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기준서의마련·보급 및 주기적인 검토·수정·보완 5.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6.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반의 구성·운영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8.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 술지원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 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 관리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 의 적합 여부의 확인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 서의 접수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 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 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3.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이배출시설등(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하거나 개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 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		
보존한 자		
⑤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		
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		
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제13603호, 2015.12.22.〉	부 칙〈제27737호, 2016.12.30.〉	부 칙 〈제68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한다.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환경부장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할 수있다.		
제3조(통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부터 적 용한다.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 · 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 · 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603 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조(통합허가 신청 시 면제서류) 영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제30 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 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한다.

- 98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배출시 률」제8조제1항 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 한 법률 ,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 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 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하다. 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배출부 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과금이나"로 한다. 하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 개정한다. 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 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 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 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 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 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 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 기준이나「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수질

-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로
- ③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제11조"를 "「건축법」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해출하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	대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한다.	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25.「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른 배	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금	령」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4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5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한다.	시행령」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률」제6조에 따른 허가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	
제14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신설한다.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률 시행령」제49조제1항 또는「환경오염시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나목"으로 한다.	

н г	II A 크	II 취 그 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같이 신설한다.	하여"로 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률」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		
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한 법률」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배출부		
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제11조"를 "「건축		
법」제11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한 법률」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		
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		
기준"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 칙〈제14476호, 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63〉까지 생략 〈64〉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생략		
제5조 생략		
부 칙〈제14532호, 2017.1.17.〉 물환경보전법	부 칙〈제27792호, 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688호, 2017.1.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86〉까지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생략 (8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4호"를 "「무환경보전법」제2조제4호"를 "「무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한다)"로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한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 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기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		
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		
법」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		
전법」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		
법」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		
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88〉및〈89〉생략		
제7조 생략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제15107호, 2017.11.28.〉		부 칙〈제735호, 2017.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583호, 2018.1.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 칙〈제745호, 2018.1.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 "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무환경보전법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및 6)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시행령」"으로 한다.	전법」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2) 외의 부분, 같은 호다목, 같은 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나목 비고 중"「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라목 비고 제2호·제4호중"「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다목1) 비고 및같은 호마목1)가)부터마)까지외의부분중"「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으로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 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 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셸 생략	
		부 칙〈제752호, 2018.3.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腐熟) 단서 중 "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797호, 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 -

CONTENTS ST

[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117
[별표	2]	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118
[별표	3]	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120
[별표	4]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3조 관련) ······121
[별표	5]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122
[별표	6]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
[별표	7]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126
[별표	8]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126
[별표	9]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131
[별표	10]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132
[별표	11]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 측정기기별 부착 대상·방법·시기 및 측정 대상·항목·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34
[별표	1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136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137

[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 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 목에 따른 매립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3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2018년 1월 1일
6. 1차 철강 제조업(241)	2018년 1월 1일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8년 1월 1일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2019년 1월 1일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2019년 1월 1일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2019년 1월 1일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가. 농약 제조업(20412) 나.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다.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라.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마.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바. 화장품 제조업(20433) 사.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아.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자.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차.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9년 1월 1일
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2019년 1월 1일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020년 1월 1일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2020년 1월 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다.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라.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0년 1월 1일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2021년 1월 1일
17. 알콜음료 제조업(111)	2021년 1월 1일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2021년 1월 1일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2021년 1월 1일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20. 반도체 제조업(261)	2021년 1월 1일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1년 1월 1일

-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4.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 5.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를 공급하거나 그 사업장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장들의 업종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6.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서는 그 신청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 16.〉

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

- 1.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이상(「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 1)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30. 다만, 증가하는 양이 2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이상 6,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20에 100톤을 더한 양
 - 3)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6,000톤 이상 13,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10에 700톤을 더한 양
 - 4)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3,000톤 이상인 사업장: 2,000톤
 -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일일 폐수 배출량이 같은 항에 따른 하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700세제곱 미터 이상(「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또는 2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2.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배출시설등을 신설(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다. 이하 같다). 증설(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체 또는 변경하거나 연료·원료·부원료· 제조공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신설, 증설, 교체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 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오염물질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허가조건을 새로 설정하여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다. 나목에 따른 측정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3. 배출시설등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휘 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한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다.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 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 라. 법 제2조제2호라목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발생사업" 이라 한다)을 신규로 실시하는 경우
 - 마.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 바.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 거나「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사.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아.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법 제2 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하 "악취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법

- 제2조제1호바목의 악취 중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자.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특정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 차.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이 지정·고시될 때(같은 항 제2호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이 고시될 때를 말한다)에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다.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라.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3] 〈개정 2018. 1. 16.〉

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

- 1.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배출시설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 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3)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 중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을 말한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한다)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증설 또는 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증설, 교체 또는 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 비산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함으로써 배출시설의 규모(동일한 시설 ·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하며,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개수의 합계 또는 누계를 말한다)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 5) 비산먼지발생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6)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7)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 8) 소음 · 진동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9) 법 제2조제2호바목의 비점오염원(이하 "비점오염원"이라 한다)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장 부지면적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 10) 비점오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11)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12)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13)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의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14)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나.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 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3)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비산배출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4)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수 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6)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7) 「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악취방지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8) 다른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다. 배출시설등에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운영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연료나 원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등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 2)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3)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계획 중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2.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한 경우
 -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 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한 경우 또 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한 경우
 - 라.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마.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한 경우
 - 바.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등을 전부 폐쇄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경우
 - 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허가조건에 그 반복적인 변경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별표 4] 〈개정 2018. 1. 16.〉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3조 관련)

- 1.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 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 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다음 각 목 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환경오염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로 유출되는 오수·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저류시설(非常 貯留施設)을 설치·유영할 것
 - 나. 제18조제1항제2호의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그 측정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 다.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배출 가능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배출기준을 고시한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할 것
 - 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목에 따른 물질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것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외의 특정수질유해물 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로서「물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또는 「환경정책 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물환

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다음 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1) 배출시설을 증설하지 않을 것
- 2)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것
- 다.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제1호 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지정된 이후에 는 나목1) 및 2)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로서 다음 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1) 발생된 폐수를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전량 유입·처리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것
 - 2) 제1호가목에 따른 비상저류시설을 설치 · 운영할 것
- 마.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바. 제1호가목에 따른 비상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별표 5] 〈개정 2018. 1. 16.〉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나. 사업장별 부과계수: 1.0으로 한다.
- 다. 지역별 부과계수

l 지역	II지역	⊪지역
1.5	0.5	1.0

비고

- 1. 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2. 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3. 베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라. 농도별 부과계수

1)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료의 황함유량(%)				
구분	0.5% 이하	0.5% 초과 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2) 1) 외의 시설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구분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구분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5	0.65	0.8	0.95		

비고

<u>배출농도</u> 최대배출기

- 2. "배출농도"란 별표 6 제1호가목2)가)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 마.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별표 8 제1호라목에 따른 오염물질등 1kg당 부과금액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

나. 사업장별 부과계수

	제1종사업장 (단위: ㎡/일)							
사업장 규모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지역별 부과계수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5	1		

비고

- 1.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청정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l 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 가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b), 약간 좋음(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다. 나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라. 특례지역: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
- 2.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 3.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나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라. 농도별 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구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1	1.2	1.4	1.6	1.8					

		방류	루수수질기준초교	과율	
구분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농도별 부과계수	2.0	2.2	2.4	2.6	2.8

-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방류수수질기준 최대배출기준 농도- 방류수수질기준 × 100
- 2. "방류수수질기준"이란「물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 3.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은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 4. 제1호의 최대배출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지 않는 동일 시설의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
- 마.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별표 8 제2호라목에 따른 오염물질등 1kg당 부과금액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18. 1. 16.〉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 1)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2)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 2) 먼지의 경우
 - 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일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u>자가측정된 각각의 일일 배출량의 합계</u> 자가측정 횟수

(2)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결과, 허가배출기준 이내인 경우

(1)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1 + 검사 횟수

나)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결과, 1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2)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추가배출량 = (허가배출기준농도 - 일일평균 배출농도)
× 초과배출기간 × 검사 결과에 따른 측정가스유량

비고

1. 확정배출량과 일일평균 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2. 사업자는 해당 부과기간에 제7조제4항(제19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가목2)가)(1)에 따른 일일 배출량은 해당 부과기간에 배출시설에 연결된 배출구 별로 정해진 자가측정 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 농도에 측정 당시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가스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일일가스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측정가스유량 및 일일가스유량은 별표 8 제1호가목1)다)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4. 가목2)나)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농도는 부과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 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 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결과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5. 가목2)나)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별표 8 제1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을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약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30분 평균치를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 1) 자가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 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2) 1)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 일일평균 배출량 (방류수수질기준 × 일일평균 폐수유량)
- 3) 2)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가)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일 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 "일일폐수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폐수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8 제2호가목1)다)를 준용한다.
- 4) 2)에 따른 일일평균 폐수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2)가)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일평균 배출량"은 "일일평균 폐수유량"으로, "일일 배출량"은 "일일폐수유량"으로 본다.
-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배출농도의 3시간 평균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제1호에 따른 3시간 평균치를 말한다)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3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방류수 수질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 배출폐수유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7]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기간에 배출시설 별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농도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 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배출량을 기준이 내 배출량으로 한다.
- 나.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 다.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하되, 산정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 량으로 한다.
 - 1)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 배출량을 산정한다.
 - 2) 1)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 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 3) 2)에 따라 산정한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 나.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가목에 따른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별표 8] 〈개정 2018. 1. 16.〉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

(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기준초과 배출량
 -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 날을 산입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 획서에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 완료일까지의 기간
 - (2) (1) 외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증지 명령,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일 또는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 나) 가)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 당시 오염물질의 허가배 출기준 초과농도에 일일가스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며, 오염물질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오염물질	산정방법
일반 오염 물질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64÷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17÷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34÷22.4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76÷22.4

구분	오염물질	산정방법
특정	불소화합물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19÷22.4
대기	염화수소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36.5÷22.4
유해	염소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71÷22.4
물질	시안화수소	일일가스유량×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10 ⁻⁶ ×27÷22.4

- 1.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허가배출기준 농도
- 2.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말한다.
-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그 밖의 대기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4.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Sm³)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 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 다) 일일가스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측정가스유량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일일가스유량 = 측정가스유량 × 일일조업시간

비고

- 1. 측정가스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m³/h)로 한다.
- 2.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자료의 30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 한 경우 그 초과한 30분 동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허가배출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별표 10 제2호가목 에 따른 부과기간 동안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가 허가배 출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가)에 따라 산정한 초과배출량에서 다음의 초과배출량 공제분을 공제한다.

초과배출량 공제분 = (허가배출기준농도 -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 x 3개월간 평균 배출가스유량

비고

- 1. 3개월간 평균 배출농도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 2. 3개월간 평균 배출가스유량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월 간 매 30분 동안의 배출가스유량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 3. 초과배출량 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출량 공제분으로 한다.
- 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 (1)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 (2)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값
 - 나) 위반횟수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의 배출구별로위반행위를 한 날(위반행위를 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된 자료의 30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라.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금액단위: 원)

										(176	<u> </u>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									계수
구 분	오염 물질등 1킬로 그램당 부과금액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200 % 미만	200 % 이상 300 % 미만	300 % 이상 400 % 미만	400% 이상	 지역	॥ 지역	Ⅲ 지역
황산화물	5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먼지	77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암모니아	1,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황화수소	6,0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이황화 탄소	1,6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불소 화합물	2,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염화수소	7,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염소	7,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시안화 수소	7,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비고

- 1. 허가배출기준 초과율(%) = <u>배출농도 허가배출기준 농도</u> × 100
- 2. I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 구
- 3. II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4.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 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마. 정액부과금: 0원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기준초과 배출량
 -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 날을 산입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 획서에 명시된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기간
 - (2) (1) 외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21조제1항제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중단한 날까지의 기간
 - 나) 가)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 당시 오염물질의 허가배 출기준 초과농도에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 = 일일폐수유량 \times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times 10^{-6}

비고

- 1.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 = 배출농도 허가배출기준 농도
-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 라) 일일폐수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폐수유량 = 측정폐수유량 × 일일조업시간

- 1. "측정폐수유량"이란 배출농도를 측정한 당시의 폐수유량을 말하며,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 2. 측정폐수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적산유량계로 측정하여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 폐수의 유량으로 산정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이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물 사용량 (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 3. 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된 자료의 3시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3시간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농도(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허가배출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 배출유 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른다.
- 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처음 위반한 경우								
제1종		0㎡/일 상							
사업장	부과계수 1.5 1.6 1.7 1	.8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종 사업장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종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위반횟수 적용의 일반 기준

- 가) 위반횟수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하며, 그 부과금 부과의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
-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라.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금액단위: 원)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구 분	오염 물질등 1킬로 그램당 부과금액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200 % 미만	200 % 이상 300 % 미만	300 % 이상 400 % 미만	400 % 이상	청정 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질소	5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인	5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허기	배출기	준 초	과율별	부과	계수		지역팀	별 부고	l계수
구 분	오염 물질등 1킬로 그램당 부과금액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200 % 미만	200 % 이상 300 % 미만	300 % 이상 400 % 미만	400 % 이상	청정 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페놀류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시안화합 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 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 화합물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폴리염화 비페닐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 클로로 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1.허가배출기준 초과율(%) = <u>배출농도 - 허가배출기준 농도</u> × 100

-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배출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 3.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허가 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稀釋水) 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정액부과금

- 1) 정액부과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제1종사업장: 400만원
 - 나) 제2종사업장: 300만원
 - 다) 제3종사업장: 200만원
 - 라) 제4종사업장: 100만원
 - 마) 제5종사업장: 50만원
- 2) 1)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액부과금을 적용하지 않 는다.

[별표 9]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

-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 가. 대기오염물질
 - 1) 황산화물
 - 2) 먼지
 - 나. 수질오염물질
 - 1) 유기물질
 - 2) 부유물질
-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오염물질등
 - 가. 대기오염물질
 - 1) 황산화물
 - 2) 암모니아
 - 3) 황화수소
 - 4) 이황화탄소
 - 5) 먼지
 - 6) 불소화합물
 - 7) 염화수소
 - 8) 염소
 - 9) 시안화수소
 - 나. 수질오염물질
 - 1) 유기물질
 - 2) 부유물질
 -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4) 시안화합물
 - 5) 유기인화합물
 - 6) 납 및 그 화합물

- 7) 6가크롬화합물
- 8) 비소 및 그 화합물
- 9) 수은 및 그 화합물
- 10) 폴리염화비폐닐(polychlorinated biphenyl)
- 11) 구리 및 그 화합물
- 12) 크롬 및 그 화합물
- 13) 페놀류
- 14) 트리클로로에틸렌
-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6) 망간 및 그 화합물
- 17) 아연 및 그 화합물
- 18) 총 질소
- 19) 총 인

[별표 10]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 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 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을 준용한다.
 - 나.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오염물질등의 경우
 - 1) 부과기준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가) 법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완료를 확인한 날
 - 나) 법 제22조에 따른 폐쇄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의 이행 완료를 확인 한 날
 - 다)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한 날
 - 라) 제8조에 따라 자체 개선의 완료를 확인한 날
 - 2) 부과기간
 -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8 제1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
 -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

[별표 11] 〈개정 2018, 1, 16.〉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 에/エロ크린크 메칠이는 70구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 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가) 발전시설: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나)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 황함유량이 0.5퍼센트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2) 공정 내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가스 중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가스를 연 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 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 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 는 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4)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 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나.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배출부과금 면제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2조제4항에 따른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배출부과금 면제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16조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또는 먼지 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황산화물 또는 먼 지의 배출부과금 면제
사.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 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 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는 제외한다)	배출부과금 면제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 5종 사업장의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라.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마.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 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 배출부과금 감면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 만: 100분의 20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100분의 50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100분의 80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 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별표 12] 〈개정 2018. 1. 16.〉

측정기기별 부착 대상 \cdot 방법 \cdot 시기 및 측정 대상 \cdot 항목 \cdot 방법

(제18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가. 적산전력계

1) 부착대상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의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 다)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2) 부착 방법

-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 착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 등 부대시설에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 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와 펌프를 말한다)에 만 부착할 수 있다.
- 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한다. 다만, 배출시설등의 전력사용량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다.
-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1) 부착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기오 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에 따른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한다. 다만, 부착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 시설은 제외한다)
- 다)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하며, 황산화물 측정기기의 부착만 면제한다)
- 라)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마) 연간 가동일 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 바) 연간 가동일 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 사)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 3)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을 같은 표에 따른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또는 3종 사업장으로 변경(이하 "사업장 종규모 변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이하 "종규모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다)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 (1) 기존 배출시설이 사업장 종규모 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이 된 경우로서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부착 유예를 인정받은 후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2)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가.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1) 부착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

- 2) 부착 방법
 -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 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 · 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라) 나목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하수 · 폐수 적산유량계로 측정되는 자동측정자료가 「환경분야 시험 · 검 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 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나. 수질자동측정기기

- 1) 측정 대상 및 항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다.
- 2) 부착 방법
- 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될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지역적 여건이나 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1)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2) 같은 성상(性狀)의 폐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가)와 나)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 3) 부착 시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 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18. 1.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1.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 가. 악취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징금 금액 = 조업정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100만원)

비고

- 1.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 2. 조업정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에 따르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금액

= 조업정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비고

- 1. 조업정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부과계수
제1종사업장	2.0
페이즈 나이자	1 E
제2종사업장	1.5
THOALLOT	1.0
제3종사업장	1.0
게/조 LOA	0.7
제4종사업장	0.7
게드즈 나이자	0.4
제5종사업장	0.4

2.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 수 × 1일당 부과금액(5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비고

- 1. 사용중지일 수는 법 제14조제2항,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부과계수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 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및 시 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2.0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 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 제 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	1.0
	다.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미만 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	0.5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0.5

3.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근거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			
1)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 의 경우		100	300	500
나)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 의 경우		300	650	1,000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 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300	600	900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 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500	1,000	1,500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 출기준을 초과하여 법 제2조제1호라 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경우		100	150	200

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1호			
1) 부착한 측정기기를 일부 방치하는 행위		200	200	200
2) 부착한 측정기기를 모두 방치하는 행위		400	400	500
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2호	300	400	500
바. 법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 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6항제2호	200	200	200
사.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6항제3호	120	160	200
아.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 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 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500	700	1,000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 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1,000	1,400	1,500
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	500	700
차.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등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47조 제4항제3호	200	300	500

카.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300	500	70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		100	200	300
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 여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5항	100	200	30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별표 -

CONTENTS ST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143
[별표	2]	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144
[별표	3]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145
[별표	4]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	146
[별표	5]	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149
[별표	6]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49
[별표	7]	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	152
[별표	8]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	153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6항 관련)	
[별표	10]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19조 관련) ···································	156
		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	
[별표	1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 ···································	157
[별표	13]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제23조 관련) ···································	165
[별표	14]	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	167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16]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	177
[별표	17]	수수료(제36조 관련)	178

[별표 1] 〈개정 2018. 3. 30.〉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1. 중간처분시설
 - 가. 소각시설
 - 1) 일반 소각시설
 - 2) 고온 소각시설
 -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 4) 고온 용융시설
 -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 나. 기계적 처분시설
 -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 · 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증발 · 농축시설
 -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7) 유수 분리시설
 - 8) 탈수 · 건조시설
 - 9) 멸균분쇄시설
 - 다. 화학적 처분시설
 - 1) 고형화·고화·안정화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시설
 -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 1) 소멸화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호기성 · 혐기성 분해시설

-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시설
- 2. 최종 처분시설
- 가. 매립시설
- 1) 차단형 매립시설
-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시설
- 3. 재활용시설
-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탈피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연료화시설
 - 6) 증발·농축시설
 -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다위시설을 포함하다)
 - 8) 유수 분리시설
 - 9) 탈수·건조시설
 -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 1) 고형화·고화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시설
 -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부숙(腐熟)시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 나) 사료화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 다) 퇴비화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도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 2) 호기성 · 혐기성 분해시설
- 3) 버섯재배시설
- 라. 시멘트 소성로
-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 탄화 시설
- 사. 골재가공시설
- 아. 의약품 제조시설
-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 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 다)
-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2]

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 2.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
- 3.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 4.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 억제방지시설
- 5.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 8. 「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9.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별표 3]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 1. 영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농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대기오염물질
 -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 "이라 한다)

물질명	농도기준
염소 및 염화수소	0.4ppm
불소화물	0.05ppm
시안화수소	0.05ppm
염화비닐	0.1ppm
페놀 및 그 화합물	0.2ppm
벤젠	0.1ppm
사염화탄소	0.1ppm
클로로포름	0.1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아세트알데히드	0.01ppm
1,3-부타디엔	0.03ppm
에틸렌옥사이드	0.05ppm
디클로로메탄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0.3ppm
히드라진	0.45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mg/m ³
납 및 그 화합물	0.05mg/m ³

크롬 및 그 화합물	$0.1 \mathrm{mg/m^3}$
비소 및 그 화합물	0.003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 ³
니켈 및 그 화합물	$0.01 \mathrm{mg/m^3}$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5mg/m ³
폴리염화비페닐	1pg/m³
다이옥신	0.001ng-TEQ/m ³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0ng/m ³
이황화메틸	0.1ppb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0.4mg/m ³
그 밖의 특정대기유해물질	0.00

2) 특정대기유해물질 외의 대기오염물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정량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이하 "정량한계값"이라 한다)

나. 수질오염물질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

물질명	농도기준(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그 밖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정량한계값

- 2) 특정수질유해물질 외의 수질오염물질: 정량한계값
- 2.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농도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7. 1. 19.〉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 가. 배출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등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미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되, 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나.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측정·조사·분석할 때에는 측정·조사·분석 의 일시 및 지점, 방법 등을 배출영향분석의 결과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정보

가. 대상지역 정보

- 1) 배출영향분석의 대상지역은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 주변 지역을 말한다.
- 2)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장의 부지 경계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영역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 정보에는 대상지역의 표고 및 기울기 등 지형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오염물질의 배출이 해당 지역의 대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되는 지점
 - 나)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 배출시설 주변에서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
 - 다) 배출시설 주변의 오염현황을 산정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대기질 측정망"이라 한다)이 설치된 지점
- 3)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범위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직접 방류되는 하천 또는 호소(이하 "방류하천등"이라 한다)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배출되는 하천이 건천(乾川)인 경우 등 그 유량값을 산정할 수 없어 배출영향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이

합류되는 하천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천등으로 합류되는 지점
- 나) 오염물질이 방류하천등과 완전히 혼합되는 지점
- 다) 방류하천등의 오염현황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수질 측정망"이라 한다)이 설치된 지점

나. 기상 정보

- 1) 기상 정보는 가목1)에 따른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요소의 현황을 말한다.
- 2) 기상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대상지역의 기상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조사·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환경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가) 환경부장관이「기상관측표준화법」제8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 측망"이라 한다)에서 측정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기상자료
 - 나) 제출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
 -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측정·조사·분석 자료 중 환경 부장관이 기상 정보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 하천유량 정보

- 1) 하천유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량 자료 중 배출지점과 인접 한 상류지점에서 측정·조사·분석한 저수기 유량(1년간의 일일유량 중 275 일은 이 유량보다 적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 의 자료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가) 환경부장관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수질 측정망 또는 「하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에서 측정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하천유량 정보

- 나) 제출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
-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측정·조사·분석 자료 중 환경 부장관이 하천유량 정보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라.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

- 1)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배출구별로 산정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굴뚝의 위치 및 높이
 - (2) 배출구의 형상 및 면적
 - (3) 배출가스의 속도, 유량 및 온도
 - (4)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
 -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배출지점의 위치
 - (2) 오염물질의 배출 방식
 - (3) 폐수배출량
 - (4)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
- 2) 배출 정보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배출구로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는 먼지 항목의 연간 배출량이 1톤 이하이거나 세 항목의 연간 배출량의 합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등에 대한 배출 정보를 산정하지 않는다.

3. 배출영향의 분석

가. 기존 오염도의 산정

- 1) 기존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전의 대상지역에서의 대기질·수질의 오염농도를 말한다.
- 2) 기존 오염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대상지역의 오염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조사·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오염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가) 환경부장관이 대기질 측정망 또는 수질 측정망에서 측정된 최근 3년간의 자료(먼지의 경우에는 PM-10 항목을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
- 나) 제출자가 직접 측정 · 분석한 자료
-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측정·조사·분석자료 중 환경 부장관이 기존 오염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3) 2)가)부터 다)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오염도를 산정할 때 대기질 측정망 또는 수질 측정망에서 측정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 가) 대기오염물질: 0.0
 - 나) 수질오염물질: 정량한계값의 2분의 1

나. 추가 오염도의 산정

- 1) 추가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그 대기 또는 방류하천등에서의 오염농도의 증가량을 말한다.
- 2)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대기에서의 농도 증가량의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 중「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목표수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균치를 각각 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산정하여야 한다.
 -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대상지역 정보
 -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기상 정보
 - 다) 제2호라목1)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정보
- 3)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방류하천등에서의 농도 증가량 의 연간 평균치를 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가) 제2호가목3)에 따른 대상지역 정보
 - 나) 제2호다목에 따른 하천유량 정보(오염물질을 호소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최초로 호소에 배출된 시점부터 호소에 완전히 혼합된 시점까

- 지 농도가 감소하는 비율을 말한다)
- 다) 제2호라목1)나)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정보
- 라) 가목에 따른 기존 오염도
- 4) 사업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부터 마)까지의 오염물질에 대한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 다)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로서 방류하천등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 라) 수질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그 수질오염물질
-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추정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추가 오염도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등

다. 총 오염도의 산정

- 1) 총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 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 오염 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농도를 말한다.
- 2) 대기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대기에서 예측되는 농도의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수 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균값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 3)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방류하천등에서 예측되는 농도의 연간 평균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영향분석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1호에 따라 설정하되, 「대기환경보 전법」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 가. 영 별표 4 제2호라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 나. 영 별표 4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또는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3호에 따라 설정한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3호나목1)가)에 따른 청정지역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따르되,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농도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별표 6] 〈개정 2017. 1. 19.〉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 가.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한다.
 - 나.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이하 "허가배출기준안"이라 한다)이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 1)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나 목2)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중 연간 평균치(해당 오염물질의 연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장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장기 환경기 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 2)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가)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중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해당 오염물질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단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단기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장기 환경기준을 뺀 값 이하이거나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단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 나)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장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 3)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 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1)·2)의 기 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대기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목3)의 기준을 적용한다.
- 라.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 는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가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오염물질
- 2) 별표 4 제3호나목4)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대기오염물질
-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및 재 협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진동

- 가. 소음 및 진동의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설정한다.
- 나.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배출 허용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지 아니 한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인 경우
- 2)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허가배출기준안이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 한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1)에 따른 청정지역
 - 가)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1)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4 이하이고,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른 기존 오염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2)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일 것
 - 나)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1)가) 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1) 외의 지역

- 가)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 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100분의 4 이하인 경우
- 나)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1)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2)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일 것
- 다)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2)가) ·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수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목1)나) 또는 나목2)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 라.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 는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 2) 별표 4 제3호나목4)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
-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및 재 협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악취

- 가. 악취의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설정한다.
- 나.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하되, 별표 15에 따른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별표 7]

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항 목	단 기	장 기
아연 및 그 화합물	1시간 평균치 1,000 μg/m³ 이하	연간 평균치 50 <i>w</i> g/m ³ 이하
암모니아	1시간 평균치 2,500 <i>μ</i> g/m ³ 이하	연간 평균치 180 <i>u</i> g/m ³ 이하
이황화탄소	1시간 평균치 100 ㎏/m³ 이하	연간 평균치 64 <i>u</i> g/m ³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1시간 평균치 150 μg/m³ 이하	연간 평균치 5 <i>µ</i> g/m³ 이하
수은 및 그 화합물	1시간 평균치 7.5 μg/m³ 이하	연간 평균치 0.25 _{ug} /m ³ 이하
구리 및 그 화합물	1시간 평균치 200 μg/m³ 이하	연간 평균치 10 <i>w</i> g/m³ 이하
염화비닐	1시간 평균치 1,851 <i>μ</i> g/m ³ 이하	연간 평균치 159 <i>µ</i> g/m ³ 이하
황화수소	24시간 평균치 150 ළ/m³ 이하	연간 평균치 140 <i>µ</i> g/m³ 이하
다이클로로메탄	24시간 평균치 3,000 <i>μ</i> g/m ³ 이하	연간 평균치 700 ළ/m³ 이하
먼지	24시간 평균치 300 ㎏/m³ 이하	연간 평균치 150 ළ/m³ 이하
트라이클로로에틸렌	24시간 평균치 1,000 <i>μ</i> g/m ³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연간 평균치 12 ng/m ³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	연간 평균치 20 ng/m ³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연간 평균치 5 ng/m ³ 이하

비고: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수질오염물질

항 목	환경의 질 목표 수준(mg/L)
구리(Cu; Copper)	0.1 이하
니켈(Ni; Nickel)	0.02 이하
용해성망간(Mn; Manganese)	1 이하
바륨(Ba; Barium)	0.1 이하
셀레늄(Se; Selenium)	0.04 이하
아연(Zn; Zinc)	0.1 이하
용해성철(Fe; Iron)	1 이하
크롬(Cr; Chromium)	0.05 이하
플루오르(불소)(F; Fluoride)	1.5 이하
페놀류	0.1 이하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Trichloroethylene)	0.06 이하
1,1-다이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 이하
염화비닐(Vinyl Chloride or Chloroethylene)	0.01 이하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0.01 이하
브로모폼(Bromoform)	0.03 이하
나프탈렌(Naphthalene)	0.05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0.03 이하
톨루엔(Toluene)	0.7 이하

자일렌(Xylene)	0.5 이하
페놀(Phenol)	0.0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0.001 이하
총질소(T-N)	매우좋음(Ia) : 2 이하 좋음(Ib) : 3 이하 약간좋음(II) : 4 이하 보통(III) : 5 이하 약간나쁨(IV) : 8 이하 나쁨(V) : 10 이하 매우 나쁨(VI) : 10 초과

비고: 총질소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에서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매우 좋음(la):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2. 좋음(lb):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3. 약간 좋음(II):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 침전 ·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4. 보통(III):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5. 약간 나쁨(IV):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수 있음.
- 6. 나쁨(V):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 수로 사용할 수 있음.
- 7. 매우 나쁨(VI):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별표 8]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

- 1)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 1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2) 1)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가) 먼지 및 중금속은 시료 채취량을 1m3 이상으로 하거나, 시료채취 전·후 의 여과지 무게차를 5mg 이상으로 한다.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측정할 때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 시료의 분석결 과를 평균한다.

나. 소음 및 진동

소음 및 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다. 수질오염물질

-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 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2) 1)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채수(採水)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에 각각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수하여 혼합·분석한 결과를 평균한다. 이 경우 처음 채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채수를 하여야 한다.

라. 악취

- 1) 악취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 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

- 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같은 기준 중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 가) 사업장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 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해당 악취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 나) 사업장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0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2) 폐수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 령」별표 1 제11호에 따른 다이옥신의 측정은 배출된 다이옥신이 방지시설에 서 처리된 후 최종 방류구에서 부지경계선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까지의 구간 에서 측정한다.

2.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 판정

가. 대기오염물질

-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제3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특례를 준용한 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허가배출기준"으로 본다.
-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하지 않는 경우
 - 가) 제1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나) 별표 9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의 2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가)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 최근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 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2) 최근 1년간 자가측정의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나. 소음 및 진동

제1호나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 수질오염물질

1) 자동측정기기(영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측정기기로 한정한다. 이하 2)에서 같다)로 측정·전송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1조제5항제1호에 따른 3시간 평균치를 말한다)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10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 전송하지 않는 경우
- 가) 제1호다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다.
- 나) 별표 9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가)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1) 최근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 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2) 최근 1년간 자가측정의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 악취

제1호라목에 따라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물질 중 어느 하나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1호마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별표 9]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6항 관련)

1.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 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요소를 보통, 양호, 우수의 3단계로 평가하여야 한다.

구 분	평가 요소
가. 영 제4조제2항제1호	 ○ 허가배출기준 대비 오염물질등 배출 농도의 수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 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등 유해한 오 염물질등의 취급·관리 수준
나. 영 제4조제2항제2호	○ 사업장에 적용된 전체 환경관리기법 중 영 제4조제2항제 2호에 따른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한 비율
다. 영 제4조제2항제3호	 ○ 최근 5년간 법령 위반 건수 및 중대성 ○ 최근 5년간 환경오염사고 건수 및 피해의 심각성 ○ 법령 위반 및 환경오염사고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
라. 영 제4조제2항제4호	 ○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측정 여부 및 적절성 ○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측정값과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값의 일치 여부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및 적절성 ○ 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보존의 적절성

2. 검토주기의 연장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한다.

- 가.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인 경우: 3년
- 나.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이 우수인 경우: 2년
- 다.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인 경우: 1년
- 3.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요소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측정기기의 운영 · 관리기준(제19조 관련)

- 1. 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 관리기준
 - 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성능 및 측정·분석 ·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 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작성하여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3년 동안 보관하여야하다.
 - 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 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 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 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대신할 수 있다.
- 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점검·교정할 때마다 점검· 관리사항을 작성하여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1]

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

1.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

가. 제출시기: 교정 전

나. 개선사유: 표준용액을 이용한 검·교정 및 검량선 확인 등 측정기기 성능확인 및 교정

2. 측정기기를 청소하는 경우

가. 제출시기: 청소 전

나. 개선사유: 시료채취조 청소, 센서류의 전극 세척, 튜브 등 소모품 교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정도검사

1) 제출시기: 검사 전

2) 개선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

나. 설비점검

1) 제출시기: 점검 전

2) 개선사유: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등 사전 계획된 설비점검다. 비정상 상태정보 발생

1) 제출시기: 사유 발생 후 8시간 이내

2) 개선사유

가) 통신불량: 측정기기의 전원 단절, 통신회선 불량 등 점검

나) 작동불량: 시료·시약의 미공급, 주요부품 고장 등 점검

[별표 12] 〈개정 2018, 12, 3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 연료·원료 및 배출되는 오염 물질등의 특성, 설치되는 지역의 환경여건,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방지시설의 용량은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이상으로 설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후드(Hood)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대 한 흡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거지역 및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 등으로부터 소음·진동의 발생원을 최대한 분리하는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5) 용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장을 설계하고, 공정 최적화를 통하여 폐수발 생을 최소화하거나 재이용수 사용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 6) 용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등을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수를 재이용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7) 폐수처리시설의 바닥은 지반침하로 인한 폐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생산 설비 또는 야적지로부터 누출된 액상 화학물질, 고형물 등이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턱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9)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하다)을 사용하는 시설을 신설

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자동 투입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연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및 부품에 대해서는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부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2)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비산배출시설을 설치 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 3)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휘발 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 존에 관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유기용제 등 휘발성이 높은 악취 유발물질은 밀폐하여 취급·보관하여야 한다.
 - 7) 「악취방지법」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사업장에「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 치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9)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처리 방법이 다른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함께 보관할 수 있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오염물질등의 함량이 적은 연료 및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등의 발생을 줄이고 연소 효율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연료 및 원료를 반입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3) 연소실의 공기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고, 연료의 충분한 연소가 가능하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 4)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반입·보관되는 연료의 성분 및 함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록·보존하고, 공급처가 다른 연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며, 화재감지 장치 및 소화설비 등 발화에 대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공정별로 배출되는 폐수가 집수되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공 정별로 집수된 폐수의 성상(性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6) 폐수는 처리방법별 또는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처리 없이 재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흡착제, 여과재 등 방지시설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품은 방지시설의 적정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도 측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체주기를 명시하고 교체 주기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다
- 8)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은 암모니아 슬립현상(반응하지 않고 배출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9)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밸브, 배관, 패킹 등에서 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온도, 압력, 유속, 송풍량(급·배기량) 등 운전의 주요 매개변수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11) 연소 개선을 통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대기오염물질배 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연소 조건을 기록하고, 그 조건이 유지되도록 관리하

여야 하다.

- 12) 안정적으로 공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13)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신고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 14) 환경 관련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15) 오염물질등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 등이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다른 형태의 오염물질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16) 배출시설등을 가동하는 기간 동안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종료 등으로 배출시설등을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하수 및 토양을 시설 설치 전의 상태로 복원(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지하수 또는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7)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배출 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 2.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가스터빈, 송풍기, 증기터빈, 팬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흡음기, 방음설비 또는 차음설비를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를 밀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터빈, 발전기, 펌프, 압축기, 전동기, 팬 등 회전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회전기계의 기초(Anchoring)에 나선형 강재 스프링, 고무 성분 등 진동방지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기초의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 3) 세척수에 유분(油分)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에 유수분리조 (油水分離曹)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액체연료 이송배관은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고 차량 및 그 밖의 장비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지상의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송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굴착 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 5) 지정악취물질은 밀폐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액체연료 저장시설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불투수성(不透水性)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고체연료를 하역할 때에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낮은 위치에 서 하역하여야 한다.
 - 2) 고체연료를 선박에서 컨베이어 벨트 등의 운반장치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장치를 밀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2차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Biomass)는 집진설비가 설치된 밀폐형 사 일로에 저장하여야 한다.
 - 4) 이탄(泥炭)은 운송과정에서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함수율(含水率)을 최소 40%로 유지하여야 한다.
 - 5) 비산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연소잔재물, 소석회(消石灰) 등의 저장시설 투입 구는 최대한 밀폐하고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된 컨베이어나 차량 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6)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액체연료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연료가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7) 휘발성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액체연료는 밀폐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8)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부지 경계지점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고체연료를 야적하는 경우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표면 덮개를 설치하고 빗물은 집수하여 침전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10) 2차 연료로 사용되는 슬러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밀폐되거나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로 수송하고 밀폐된 건물 내에서 하역하여야 하며, 흡착시설을 설치 한 폐쇄형 사일로나 음압 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 11) 슬러지 등을 2차 연료로 사용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비산재와 바닥재는 유출되거나 먼지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 및 이송하여야 한다.
- 12) 액체연료 저장시설과 이송배관은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첨가제와 반응제는 서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각종 세척수, 유출수, 헹굼수 등은 유분, 중금속, 염분 등의 포함 여부를 주기 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3.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공기압축기, 증기터빈 발전기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방음설비 내부에 설치하거나 흡음설비, 방음설비 또는 차음설비를 설치하고 출입구의 닫힘상태를 유지하는 등 소음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2)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3)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보관·처리시설에 출입 및 개폐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함한 공기는 연소실 공기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공기 공급 장치를 통해 연소실로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덮개를 설치하거 나 컨테이너 형태의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부지 경계지점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 3) 증기 트랩에서 증기가 배출될 때 수격 작용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가급적 사전에 해체하여 파쇄물의 크기를 줄여야 하며, 파쇄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파쇄기 전단 날의 마모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여야 한다.
- 5)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 6) 폐기물 소각로는 가급적 연속적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 7) 폐기물의 지하시설 보관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이동할 때 배관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8) 누출이나 누수로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은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불투수성 시설이나 내부 배수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9) 지하저장 용기의 누출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용기의 수 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10) 다이옥신류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에 따라 소각로 출구 배출가스가 최적 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2)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바닥재 시료를 정기적으로 채취 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강열감량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3)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에는 라벨을 부착하고,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시설 내에서 폐기물이 자연발화하는 현상 등에 대비하여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등 소방 설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밸브, 커넥터, 플랜지 등 원료 또는 제품의 누출 위험이 있는 설비 및 부품은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하며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로(furnace) 내에 침적된 코크스 등 불순물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 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하고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중금속,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유지·보수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등이 대기로 직접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에틸렌을 제조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열교환기의 냉각수에 벤젠, 큐멘, 에틸 벤젠, 핵산, 나프탈렌, 스틸렌,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및 1,3-부타 디엔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배출되는 탄화수소 또는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는 등 원료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3) 유증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증기 회수설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배기구 등을 통해 빠져 나온 유증기를 최대한 회수하여야 한다.
 - 4) 공정 폐기물과 잔류물의 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5) 냉각시스템에는 무독성 또는 저독성의 냉각수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접냉각 시스템을 최대한 적용하여야 한다.

- 5.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제강공정 및 주조공정 등 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에서는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탈지단계에서는 탈지용액 정화 및 재사용을 통한 탈지 순환을 실시하여 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
 - 나.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고철을 사용할 때에는 이물질의 투입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코크스로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탄화수소 함량이 큰 폐수 등 유기물이 포함된 폐수는 냉각수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 3) 사용된 폐산은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재순환하여야 한다.
 - 4) 공정 과정에서 추출된 부생가스는 최대한 활용하여 1차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 6. 영 별표 1 제7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배출시설등
-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생산되는 제품별로 공정의 특성과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용용과정에서 솔트 슬래그 또는 솔트 케이크 등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과 교통로에 침적된 먼지를 제거하고, 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청소를 하거나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스크랩 또는 절삭분 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에 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야 하다.
- 7.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상압증류(常壓蒸溜)공정, 감압증류(減壓蒸溜)공정, 고도화공정에서 발생하는 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성가스처리 설비, 황 회수 설비 또는 폐가스처리 설비 등의 황 성분 회수·처리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2) 저장용량이 20㎡이상인 유류저장시설은 저장용량의 110퍼센트 이상의 내 부용적을 가진 방류벽과 저장용량의 90퍼센트 이상 주입 시 넘침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공급차단 장치 또는 수위 경보장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누유 여부의 모니터링 시설 및 누유 시 경보가 작동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3)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비상운전 상황에 대비하여 환경·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운전중 플레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 4) 코크스 및 촉매 배출 공정은 비산먼지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를 설계해야 하고, 설비 및 배출구에는 이중 차단설비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서 환경 및 안전사고로 인한 수계로의 오염물질 유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빗물관에 차단시설 또는 비상저류(貯留) 시설을 설치하고, 차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 기능이 있는 시설을 설치·유영해야 한다.
- 6)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정전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운전상황을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비상저류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 7) 중금속,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분해가 어려운 유 기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 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염소 성분, 황 성분 등 설비를 부식시키고 연소 후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성분을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받지 않고 플래어스택으로 유입처리해 서는 안 된다.
 - 2) 설비의 유지 ·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으

- 로 직접 배출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내부부상형탱크 또는 외부부상형탱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염 물질의 비산배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밀폐장 치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공정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류 및 폐기물은 회수하여 연료화하는 등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류 또는 폐기물을 자체 연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반응에 의해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원료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 3) 상압증류설비 및 감압증류설비 등의 탈황(脫黃)설비는 부식 방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산성 원유 등 부식성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식방지 제 등 부식을 제어할 수 있는 부식방지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 4) 간접 냉각수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8.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 오염물질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 2) 과산화수소 제조공정의 경우에는 공정 운영 중(가동 시작 및 가동 정지를 포함한다)에 발생된 배기가스 중 탄화수소류가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회수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과산화수소 제조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또는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오염 물질의 처리를 위한 설비별 최적운영조건을 도출하여 관리해야 한다.
 - 4)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소 및 염화수소의 비산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관로 및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 5) 중금속,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 함유된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 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 6)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低減施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 출고로 환산하여 처리대상 면적에 대해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해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설비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2) 광석 및 분체상(粉體狀) 원부재료 사용으로 비산먼지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역, 운송, 이동, 보관 및 저장 과정에서 먼지가 비산되지 않는 구조 로 설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침전부 및 여과부의 침전물, 여과된 물질 등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운영·관리사항을 월 1회 기록하 여 강우 전·후의 시설물 점검 기록과 함께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 4) 보오크사이트를 원료로 수산화알루미늄 제조시 발생하는 공정오니(汚泥) 는 침출수 및 먼지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처리 및 관리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공정폐기물과 부산물의 성분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는 등 원료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 3) 중금속 함량이 높은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 내에서 중금속 회수율을 높여 폐수 및 폐기물에 배출되는 중금속 함량을 최소화해 야 한다.
 - 4) 연속식으로 운영되는 발열반응 공정 또는 폐열 발생공정의 경우에는 스팀 생산, 열교환 등의 효과적인 열회수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의 연료

사용량을 저감해야 한다.

- 9. 영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원료 투입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탄화수소류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 이상으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설계하여 설치·운영해야 한다.
 - 2) 액상물질(공업용수 등 오염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을 이송하는 배관은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및 그 밖의 장비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지상의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고 이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송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경로를 도면으로 작성 · 보관하고 굴착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 3) 젤라틴 제조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돈피와 우피의 취급으로 인하여 악취 가 발생하는 공정은 밀폐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음압(陰壓)으로 관리하는 등의 악취저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유기용제 등 액상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 방류벽 또는 바닥면 포장 등을 설치해야 한다.
 - 5) 사업자는 다음의 각 공정에서 굴뚝 등 배출구 외에 직접 배출되거나 누출되는 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수시설 또는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가소제 제조공정: 알코올류(옥탄올, 2-에틸헥산올)
 - 나) 산화방지제 제조공정: 메탄올 및 이소부틸렌
 - 다) 계면활성제 제조공정 및 접착제 제조공정: 알킬페놀류
 - 6) 중금속, 유독성 유기화합물 및 염화 유기화합물 등 생물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 함유된 폐수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별표 6 제3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폐수는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원료투입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개폐를 최소화해야 하며, 설비 세척 시에는 고압세척, 스팀세척 등의 세척효율이 높은 방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2)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상시 밀폐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가스를 연소시설의 연소기로 활용하는 등 악취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 3) 액체원료 저장시설과 이송배관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기의 수 위 및 누출여부 등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간접 냉각시스템을 최대한 적용해야 하며, 간접냉각수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는 등 원료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 해야 한다.
 - 3)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에는 라벨을 부착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유해 성 정보를 표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 10.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 1) 인광석과 황산의 반응시설은 최대한 밀폐해야 하며, 반응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2) 희질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별도의 탈질(脫窒)설비를 설 치하고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설비별 최적운영조건을 도출하여 운영해 야 한다.
 - 3) 질산 등의 유·무기산 저장시설(황산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4) 폐석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며, 공정 내에서 재이용하거나 침출수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
 - 5) 폐석고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 불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생물

학적 처리가 어려운 폐수는 별도의 계통으로 처리해야 한다.

-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1) 인광석은 밀폐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밀폐된 컨베이어나 차량으로 이송해야 한다.
 - 2) 유기질비료 제조공정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은 밀폐하여 취급·보관해야 한다.
 - 3) 비료 제조공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입자상물질은 최대한 포집하여 재이용해야 한다.
 - 4) 설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처리하여 해당 설비에서 오염물질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하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폐가스 및 폐수는 방지시설에서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1) 비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조립수 또는 폐가스세정시설의 세정수 등의 적절한 용도로 최대한 재이용해야 한다.
- 2) 공정 내에서 반응하지 않은 원료나 부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화학물질은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는 등 원료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사용되는 촉매는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촉매의 활성 저하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 4) 황산 제조공정에서 흡수시설의 황산화물 배출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여 흡수시설의 효율 저하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 5) 연속식으로 운영되는 발열반응 공정 또는 폐열 발생공정의 경우에는 스팀 생산, 열교환 등의 효과적인 열회수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의 연료 사용량을 저감해야 한다.
- 6) 인광석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성분 및 함량 을 부석하여 기록·보존해야 한다.

[표 13] 〈개정 2018. 12. 31.〉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제23조 관련)

-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2) 고체연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료의 성분 분석서를 확보하고 연료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
 - 3) 고체연료 저장소에 모인 빗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중금속, pH, 용존산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모인 빗물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사업장에「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5)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신고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 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염화비닐 단량체를 포함한 염소계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에틸렌, 염화비닐 단량체, 디클로로에탄, 염소 또는 염산을 원료 또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2)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제조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건물 및 사업장 내부

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3) 사업장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4)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신고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영 별표 1 제3호·제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2)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신고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 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사업장에「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사업장에「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코크 제조설비 및 유동상 접촉분해설비(Fluidic Catalytic Craking)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상 에서 비산먼지의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클로로알칼리, 무기안료 및 실리콘 제조시설은 염소 또는 염화수소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화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 시설
 -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사업장에「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사업장에「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 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
- 5) 플라스틱 및 고무 첨가제 제조시설은 염화비닐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6) 계면활성제 및 접착제 제조시설은 알킬페놀류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 1) 폐석고 매립시설은 침출수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2)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인산 제조공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소가 주변지역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하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4]

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가목8)나) 중 매연의 경우, 제2호가목 중 법 제2조제2호가목·라목 또는 바목의 시설의 경우및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법 제2조제 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그에 딸린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나목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위반 횟수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위반횟수는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 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행정처	분기준	
ਜ ਦੇ ਨਾ ਲ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 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가)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 거나 운영한 경우	제2호	사용증지			
나) 법 제7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 치 또는 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 되는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 한 경우		폐쇄명령			
3)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 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 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제1항	허가취소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 하거나 운영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가)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 거나 운영한 경우	제4호	사용증지			
나) 법 제7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 치 또는 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 되는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 한 경우		폐쇄명령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2항 제1호	사용중지			
나) 가) 외의 경우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 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 업장의 경우	제1항 제5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나)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 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 업장의 경우		경고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 을 가동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법 제14조 제2항				

가) 소음·진동 또는 잔류성유기오 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 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사 용중 지 경고		사용중지 조업정지 20일	사용증지 조업정지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 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 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 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기취소
9)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5업정지 30일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 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제7호	허가취소				나)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 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조업정지 조업정지 하기취소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10일 3개월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사용증지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조업정지 조업정지 하기취소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10일 30일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 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	제11호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기취소		(3)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 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 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 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1 1-1		(4)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조업정지 조업정지 하기취소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 10일 30일 석하여 배출한 경우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쥐소		(5)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	5업정지 30일

다)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 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 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 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한 경우	, n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1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3항 후단				
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 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나)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증지	허가취소		
1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 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12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허가취소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 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13호	허가취소			
14)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 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 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 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16)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 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나) 기록 ·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 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인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비고

- 1.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가. 위 표의 2)가), 4)가), 5)가) 및 7)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날(가동개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날)
- 나. 위 표의 8)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날
- 다. 위 표의 11)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날 또는 설치기준에 맞는 저감시설 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 2. 위 표의 9)나) 및 12)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 기간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 3.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위 표의 8)나)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1호에 따른 생태독성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위 표의 8)나)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 5. 최근 1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 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과 관련 하여 위 표의 5) 또는 16)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이 비 기 젊.	근거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제1항 제8호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나) 사업장 안의 일부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다) 사업장 안의 모든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 위를 한 경우	제1항 제9호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 위를 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		
라)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 위를 한 경우						
(1)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2)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 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 작한 경우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허기취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 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					
(4) 수질자동측정기기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 나 사용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4항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 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허가취소			

[별표 15] 〈개정 2018. 12. 31.〉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³)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설비용량 100MW 미만인 액체연료 사용시설	18(6) 15(6) 33(6)
황산화물 (ppm)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 (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1(4)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80(6)
질소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2001년 6월 30일 이전에	140(6) 70(6) 80(15)

설치한 가스터빈)	
(나) 그 밖의 발전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42(4)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43(4)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³)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0(12) 20(12) 20(12) 20(12)
황산화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사업장 일반 폐기 물 소각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30(12) 30(12)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30(12)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TO(12)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70(12) 9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70(12)
질소산화 물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ppm)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 시설	7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 기물 소각시설	70(12)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50(12)
일산화탄소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200(12)
(ppm)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200(12)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 기물 소각시설	50(12)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염화수소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ppm)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Λ. L>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20(12)
	7 10 11 = - 1 1 =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 기물 소각시설	15(12)

3)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30(4)
먼지 (mg/Sm³)	나)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12)
황산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328(4)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미만인 시설	135(4)
질소산화물 (ppm)	(2) 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미만인 시설	150(4)
	나)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 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 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다)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라)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정의 가열시설(기체연 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 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1(4)
	마) 옥탄올 또는 부탄을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일산화탄소 (ppm)	가)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 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50(12)

나)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다)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 제조공정의 폐가 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48(12)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 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45(12)
마) 부타디엔 고무,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스티렌 부타디엔 라텍스 또는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 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³)	 가) 제선공정 (1) 소결로(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소결광 후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 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나) 제강공정 (1) 전로 및 정련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연마시설 라) 산재생시설 	26(15) 25 20 40 15 10 40 44
황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93(15)
질소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 치한 시설)	200(15)

	나) 압연공정의 가열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1)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200
염화수소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
불소화합물	가) 제강공정의 전기로	3
(ppm)	나)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
암모니아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5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용·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용융·용해 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9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먼지 (mg/Sm³)	(1) 정련을 위한 용용·용해시설(2015년 1월 1 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 치한 시설)	1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 (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 전에 설치한 시설)	5
황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80
질소산화물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6
(ppm)	나) 기타 비철금속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 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3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다)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9(4) 19(4) 28(12)
황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황산 재생시설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2014년 12 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134(4) 202(8) 180(4)
	라)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건식 황산 회수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만 해당한다)	265(12)
질소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증발량이 시간 당 50톤미만인 시설만 해당한다)	148(4)
4 1 7	나)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41(12)
황화수소 (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 3
일산화탄소 (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30(12) 115(12)

암모니아 (ppm)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46
벤젠 (ppm)	폐수소각시설	7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염화수소 (ppm)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 염산제조시설(염산 및 염화 수소 회수공정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질소산화물 (ppm)	가)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나)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다)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50 193 145

8)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황산화물 (ppm)	황산 제조시설	218(8)
질소산화물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68
(ppm)	나) 희질산 제조시설	195
암모니아 (ppm)	질산암모늄(초안) 제조시설	12
불소화합물 (ppm)	인산 제조시설	3

비고

- 1. 최대배출기준 난의 표준산소농도는 배출가스 중 산소의 비율을 말한다.
- 2.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 3. 가목1)부터 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4. 가목1)부터 8)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 5. 가목4) 및 5)의 배출시설란 중 "전기로"란 전기아크로 및 전기유도로를 말한다.
- 6.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용융·용해시설"이란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를 말한다.
- 7.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귀금속"이란 금, 은 및 백금족(백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이리듐, 오스뮴)을 말하고, "희소금속"이란 인듐, 갈륨, 셀레늄, 텔루륨, 레늄, 비스무스, 안티몬 및 텅스텐을 말하며, "기타 비철금속"이란 니켈, 코발트 및 마그네슘을 말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2) 또는 질소산화물(NO2): 비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의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에 따른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비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되는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2) 또는 별표 8 제2호나목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가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오염물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 소음·진동

- 가. 소음의 최대배출기준은 70dB(A)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5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나. 진동의 최대배출기준은 75dB(V)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화학적산소요구량	40 이하
부유물질량	30 이하
총질소	60 이하
총인	2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최대배출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2)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항목	최대배출기준(mg/L)
화학적산소요구량	50 이하
부유물질량	40 이하
총질소	50 이하
총인	6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최대배출기준을 정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 세제 곱미터 미만이면서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의 업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의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 3)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 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하수도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 된 수질오염물질:「하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수질기준

4. 악취

악취의 최대배출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 허용기준 중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별표 16]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구 분	측정횟수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분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 톤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2. 수질오염물질

구 분	측정횟수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배출구	분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700m³ 이상, 2,000m³ 미만인 배출구	분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200m³ 이상, 700m³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50m³ 이상, 200m³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50m³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별표 17]

수수료(제36조 관련)

종 별	수수료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40,000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15,000원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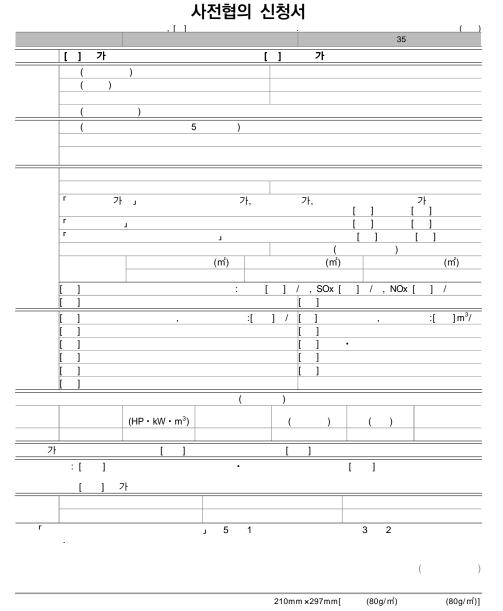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별지서식 -

CONTENTS ST

[별지	제1호서식] 사전협의 신청서 ···································	183
[별지	제2호서식] 사전협의 결과서	184
[별지	제3호서식]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185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등(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검토 결과서 ·······	186
[별지	제6호서식] 의견서	187
[별지	제7호서식]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187
[별지	제8호서식] 가동개시 신고필증	188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	188
[별지	제10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189
[별지	제11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	189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	190
[별지	제13호서식] 확정배출량 명세서	191
[별지	제14호서식]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195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	195
[별지	제16호서식]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196
[별지	제17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197
[별지	제18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197
[별지	제19호서식]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198
[별지	제20호서식]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198
[별지	제19호서식]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	199

[별지 제1호서식]

글시 제 오지크 가 (http://ieps.nier.go.kr) .



가

가

(가)

(80g/m²)]

210mm ×297mm[

[별지 제2호서식]

	사전협의 결과서
r 가	, 5 2 3 3
가	
• r	기 가 가 1

[별지 제3호서식]

가 (http://ieps.nier.go.kr)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35 (5 1 25) 5 가 [] 가 」 가, 가, [] [] J [] (m^2) (m^2) (m^2) : [] / , SOx [] / , NOx [:[] m³/ :[] / []:) $(HP \cdot kW \cdot m^3)$ 가 J 6 1 6 1 가

210mm ×297mm[

(80g/m²)

(80g/m²)]

()

1 6 1 7: 40,000

- 1. . .

- 4.
- 5. , , , ,
- 6. 가 (BREF) 가 (BAT) 가 (BAT Conclusion) 가

 7t

 ()

 7t

 8t

 8t
 </t

[별지 제4호서식]

가 (http://ieps.nier.go.kr)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 []					()
						35 (2 5 2 25 2	1 !),	15
	[]	가			[]			
	(\)					
	()						
	()					
	(5)				
	Г	가 .	ı	가,		가,	[]	가 []
	Г	1					[]	[]
	<u>'</u>			J		([]	[]
				(m²)		(m²)	,	(m²)
	[]			:	[]	/ , SOx [] / , NOx	[] /
	[]					[]		
	[]		1	:[] /	[]	,	:[]m ³ /
	[]					[] .		
	[]					[]		
	[]							
	ı			()			
		(1	HP·kW·m³)		()	()	
			[]		1]		
) :	[]		•			1	
) :	[] []	가			[]	
	, [] 6	3) 6 2			([] 6 2	2
•	, , , , 0	ŭ		, .				()
					210m	nm ×297mm[(80g/m²)	(80g/m²)]

					1		6 2 가: 15,0	00
1.								
2.	Г			١.	13 1			
			5	()				
3.	가			•		,	,	
	가	,		, г			ı	
	, г			1			, г	
	J					-		
4.						•		
5.		,			,			
6.	가	(BREF) 가	가	(BAT)	가	(BAT Cond	lusion)	
-	71							

→	→	フト() ())	>			→		
가		가	,		(가)		7	+

가

[별지 제5호서식]

						(
[][배출시설등	1	· 운영허기 해가 ^{7 3} ^{7 4}	^ㅏ 검토	결과서 7 7 7	
()						
()						
	(가)			
	(가)			
:		가 (: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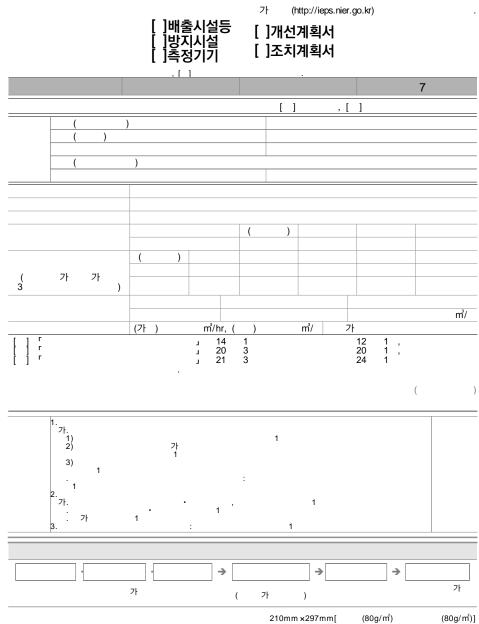
210mm×297mm[

(80g/m²)]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가 (http://ieps.nier.go.kr) 가 (http://ieps.nier.go.kr) 의견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15 (5 1 , [] ([] 가(), [] 가(), []) 가) 가 1 가 [] [가 7 3, [] [[] J 12 1 10 1 가 5,000 가 (가 • 가 30 210mm ×297mm[$(80g/m^{2})$ $(80g/m^2)$] 210mm ×297mm[(80g/m²) (80g/m²)] [별지 제8호서식]

		가동개시	신고 [:]	띨증		
()					
(
()			(:)
				가		
г	가	12 ر	2		10 3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가 (http://ieps.nier.go.kr) 가 (http://ieps.nier.go.kr)]배출시설등]방지시설]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자체 개선계획서 , [] , [] () 가 가 m³/ () (가) m³/hr, (m³/ 가 л 8 1 л 20 1 13 1 , 21 1 12 3 ,] []] [] 20 2 , 20 3 24 21 기. 가. 1) 2) | 2. 가.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10mm x297mm[$(80g/m^{2})$ $(80g/m^2)$] $(80g/m^{2})$ $(80g/m^2)$] 210mm ×297mm[

[별지 제12호서식] 가 (http://ieps.nier.go.kr) 자체 개선이행보고서 , [] [] [8 1 13 3 , J 20 1 21 3 가 가

(가)

(80g/m²)

(80g/m²)]

210mm ×297mm[

				호	∤정배출 량	명세서					
()							()			
	,							()			
()											
									(:)	
I									(:)	
1.											
						(, ke/)				(%)	(kg/)
	(, ke/)							(kg/)	
2. 1											
	16 -1	16 -2	①6 -3 (ppm)	⑪ -4 フト (Sm³/)	①6 -5 (kg/)	⑥ -6 (kg/)	16	-7	16 -8	16 -6 ×16 -8	16 -9 16 -7 ×16 -8
16 プト											
1	௰ -1	① -2	① -3 (ppm)	① -4 フト (Sm³/)	① -5 (kg/)		18 (kg/)			
							(0	,			

	10)	1	(f) 2	10		ď) 1	10 5		10	6		10 7							(4	2
	(19) -	1	19 -2			(Si	n³/)	(kg/)					<u> </u>		19	-8	19	-6×19			×19 -8
19 가																					
20	20 -	1	② -2			(2)) -4 '}	② -5				<u></u>									
(4)				(ilig/	3111)	(3)	117)	(Kg/)				(kg	g/)								
						22															
g/L)																					
(m³)																					
kg)																					
	(m³)	(m³)	(m³)	(m³)	(mg/ (mg/	(mg/Sm³) (mg/Sm³) (mg/Sm³) (mg/Sm³)	(m)	(mg/Sm²) (Sm²/) (Sm²/) (9 7) 20 -1 20 -2 20 -3 20 -4 7\frac{1}{2}	(m²) 7+ (m²) 7	(m²) 7+ (m²) 7	(mg/Sm) (mg/Sm) (sm/) (kg/) (mg/Sm) ((m²) 21 (m²) 22 (m²) 3 (m²/ Sm²) (sm²/) (kg/)	(Ng) 71	(m) (m) (s) -2 (s) -4 (s) -5 (s)	(m²) (m²) (m²) (m²) (m²) (m²) (m²) (m²)	(kg/) (mg/Smi) (Smi/) (kg/) (kg/) (mg/Smi) (mg/Smi	(mg/Sm²) (Sm²/) (kg/) (2) (kg/) (1) (kg/) (k	18 2} 20 1 20 2 2 20 3 20 4 20 5 20 (kg/) (kg/) (kg/) (kg/) (kg/)	3	3 7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g/sm) (sm/) (kg/)

(4 3) 23 (mg/L) (m³) (kg) 24) (kg) (kg) 14 1 () () Г ј 9 3 1. 31 1 2. 3. 1 (1 (4. J 35 4 1 (6. 7 1 2 가 1) 3) 100 20 1

```
(4 4)
1.
1.
2.
3.
 4.
5.
7.
8.
9.
10. 16 -1
11. 16 -2
                                                             19 -2
                                                                                                                                                      가
                                                                                                                                                                                                                                                                                                                                                                                                                                                                                            3
12. 16 -3
                                                             19 -3
                                                                                                             가
13. 16 -4
                                                                                                                                                                                        가
                                                                                                                                                                                                                                                                                                                                                                                                                                   가
                                                                                                                                                                                                                                                                                                                                                                                                                                                                                                                                                                        가
                                                                                                                                                                                                                                                                                                                                                                                                                                                                                                                                                                                                                                                                                                                                           가
  가
                                                                                                                                                                                                                                      30
14. 16 -5
                                                                                                      (16 -5) =
                                                                                                                                                                                ((6 - 3) \times 7) ((6 - 4) \times 10^{-6} \times 64 \div 22.4
                                                                                                                                                              (⑪ -3) × 가
                                                                                     (19 - 5) = 
                                                                                                                                                                                                                                                              (19 - 4) \times 10^{-6}
                                                                                                                                                                                                                                                                                                                                                                                                                                                                                                                                                                                                                                                                                                                                                                                               3
                                                                                                                                                                                                                                                                                                                                                                                                                                                                                                      (30+27+33) \div 3 = 30kg
                                                 가
⑪ -7
                                                                                                                                                                                                   (16 -5)
                                                                                                                                                                                                                                                                16. 16 -7
                                                                                                                                                                                                                                                                                                                                                                                                                                            (17) -1
                                                                                                                                                                                                                                                                                                                                                                                                                                                                                                  20 -1
                                                                                                                                                                                                                                                                                                                                                                                                                                                                                                                                                                                   가 `
(30+40) \div 2 = 35kg
(30+40+50) \div 3 = 40kg
                                                                                                                                                                                                                                                                                                40kg 50kg
                                                                                                                                                                                                                                                                                                                                                                           2
19. 16 -9 19 -9
가. 16 -7
                                                                                                                                                                                                                                                      ·
(16 -9) =
(16 -9) =
                                                                                                                                                                                                                                                                                                                                                                              ·
(16 -7) ×
(16 -6) ×
                                                                                                                                                                                                                                                                                                                                                                                                                                                            (16 -8)
(16 -8)
   . 16 -7
     . 19 -7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 (19 - 9) 
                                                                                                                                                                                                                                                                                                                                                                               (19 - 7) \times 
                                                                                                                                                                                                                                                                                                                                                                                                                                                              (19 - R)
                                                                                                                                                                                                                                                                                                                                                                              (19 -6) ×
. (19 -7
20. (18 21)
                                                                                                                                                                                                                                                                                                                                                                                                                                                              (19 -8)
1.
                                                                                                                                                                                                                                                            가
2.
3. ②
4. ②
5. ③
6. ③
7. ③
8. ③
9. 23
 10. 24
```

[별지 제1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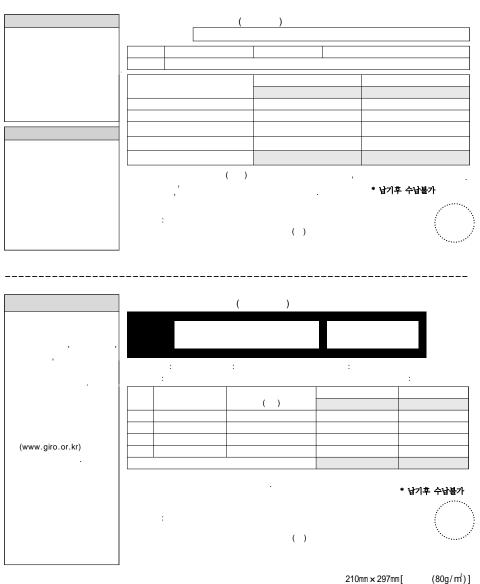
가 (http://ieps.nier.go.kr)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	[]										
												10	()
		()												
		()												
			,												
		()												
1.															
<u>''</u> 가.		1 1 2	가												
		•			(, (SO ₂ , NO ₂)							
2.															
г					J	16				16	1				
					•						•				
													()
	1. 가	11	1 가	. ,											
	1			1 ()									
							1	1							
	2. 3. 가	11 11	1 2			:			1						
	기 가	. ''	٠.			1									
					1	1									
		→			→			→			-	•			
								. L						가	
				가			(가)						
							21	0mm ×	297mm	[(80g/m	ı²)		(80g/	′m²)]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



			= .	_						
			배줄두	부과금 신	정명	ų,	서			
٥	:									
0	:									
0	:									
			가		가					
	i	(mg/Sm³, opm. mg/L)	(mg/Sm³, ppm. mg/L)	(mg/Sm³, ppm., mg/L)	(m³/ , L/	,			()	
	:		0	<u>:</u>	(:)	
ነ ት.		kg(1 m³)	v	•	(•	,	(A
		O()								kg(B
. 가			:	/ 가		×	100 =	()%	(C
										(D
·										(E
										(F
	()							(G
			\times (D) \times (E) \times (F	F)+(G)						
• 가	:		/100							
•		:	+가							
										(80g/

								(2	2
3.										
			(mg/Sm³, ppm., mg/	'L)	(kg)	,				
0	:		~	()	<i></i>	:)		
가.	•	1kg		()	(•		,		(A)
0		×							k	g(B)
0		>							k	g(B)
(가)							
•	5	1	1)							(C)
0	5	1	2)							(C)
,	*	•	=(/)	× 100				(0)
,	5 *	2	=() × 100	-)/((-			(C)
										(D)
•										(E)
		_	: (A) ×(B) ×(C) ×(D) x(E) x(E)						(F)
· • 가	:		× 3/100	D) X(L) X(I)						
0		:		가						
	가									
	· 1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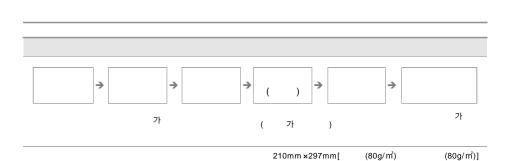
행 정 기 관 명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가 (http://ieps.nier.go.kr)

()			(/)							
	Γ			(/)	J	17 .	1			17	2
							/	(/)	(/)	
(/)	:									
				:									

							10	
	()						
	()							
					(:)
	()			
г			J .	16 1		17	3	



[별지 제19호서식]

가 (http://ieps.nier.go.kr)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신청서

							5
	()					
	()						
					(:)
	1		5		9		
	2		6		10		
	3 4		7 8		11 12		
г	1					7 4	
	/)		17 ر		17	7 4	
,	,						
						()
	1.	1					
	2.			1			
	3.	1					
						7	
	→	→	()	→		→	
			()				
		가		71	,		가
			()	2.	
				210mm ×297	7mm[(80)a/m̃)	(80g/m²)]

[별지 제20호서식]

가 (http://ieps.nier.go.kr)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15	
	()										
	()											
	,							(:)
								(•			,
								T					
•			:										
•			•					•			•	• •	•
								()		()	
		()					()				
г						18 3				18			
						10 3				10			
					•								
												()
	•												
	г												
			J	2					-	١.			
		→		>			>			→			
			가			(, 가					가	
								×207mm		(80a/m²		***	g/m²)1
						2	11)mm	~207mm	1	180a/mi	1	(20	a/mill

[별지 제21호서식]

가 (http://ieps.nier.go.kr)

개선사유서

							(:	,
			: 20 : 20						
		()	
			: 2 : 2	0					
	/	1			()		
		[]]						
г 5					20 ر	3			21
								()
								,	,
					210mm	×297mm[(80a/m	î)	(80a/m²)]



CONTENTS ST

1.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5
2.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3.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224
4.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5.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233
6.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235
7.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관한 고시237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5호, 2017.1.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배출영향분석"이란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 2. "대상지역"은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 3. "기상 정보"는 대상지역의 기상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의 지상 및 상층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요소의 현황 정보를 말한다.
- 4. "하천유량"이란 배출지점 상류에서의 수용하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량값을 말한다.
- 5. "기존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전의 대

상지역에서의 대기질·수질의 오염농도를 말한다.

- 6. "추가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하천 또는 호소(이하 "방류하천등"이라 한다)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그 대기 또는 방류 하천등에서의 오염농도의 증가량을 말한다.
- 7. "총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 오염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오염농도를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제출

제3조(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서류의 제출로 제3조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된 배출시설등 및 오염물질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 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말한다)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제3호다목, 제4항제2호아목 또는 제3호사목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제3장 배출영향분석의 기본 분석정보

- 제5조(대상지역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지형의 특성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2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지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상지역의 실제 지형이 지형도와 다른경우에는 신청자가 측정·조사·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지역 내에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오염도를 산정하는 지표면상의 지점(이하 "수용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용점을 배치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상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

- 의 자료로부터 기상요소 현황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상 배출시설로부터 가장 인접한 지점의「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따른 기상관측망 자료를 사용
- 2.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측정·분석한 자료 중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
- 3.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다)에 따른 측정·조사·분석 자료 중 환경 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자료를 사용
- ②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기상 정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 측정 지점은 대상지역의 기상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주변 건물 및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
- 2.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별 특성 에 따라 필요한 기상 요소를 측정 항목으로 할 것
-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명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기간 및 주기를 준수할 것 가. 부지측정: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간별로 측정
 - 나. 고층측정: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최소 3일 이상 측정하되 6시간 간격으로 일일 4회 측정
- 5. 측정된 수치의 보정(補正) 및 측정 자료의 검증 절차는 「기상관측

표준화법」제4조 및「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에 따를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항목, 기간, 주기 및 검증 등을 포함한 측정·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제7조(하천유량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주변지점의 자료로부터 하천유량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매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하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서 측정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 하천유량 정보를 마련·제공하여야 한다.

- ③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하천유량 정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측정 지점은 대상지역의 하천유량 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하천의 분기, 합류 또는 주변 배출원의 배출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
-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 3.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측정하되, 구체적인 측정 기간 및 주기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를 것. 다만,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측정값이「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 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 5. 산출된 결과값이 제2항에 따른 표준 하천유량 정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기간, 주기, 정확도·정밀 도의 확인 및 표준 하천유량 정보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측정·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혐의할 것

제8조(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정보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배출영향의 분석

- 제9조(기존 오염도) ①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는 대상지역의 오염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미치지않는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의 변화를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② 특수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기존 오염 도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지점에서 측정·조사·분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주변

- 지점의 자료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오염도의 추정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최근 3년간의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대기질 측정망"이라 한다)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 질의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기존 오염도는 행정구역별로 산정하되, 해당 행정구역 내 대기질 측정망의 최근 3년간의 오염도 측정값을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한다.
- ④ 하천의 기존 오염도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의 상류지점(배출지점으로부터 유량 및 오염도가 변화하지 않는 상류지점에 한정한다)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배출시설만이 분석 대상인 경우에는 하류지점의 자료를활용할 수 있다.
- ⑤ 호소의 기존 오염도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의 변화를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⑥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하천유량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유량"은 "기존 오염도"로, "유량"은 "오염도"로 본다.
- ⑦ 환경부장관은 매년 최근 3년간의 수질 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기존 오염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2조제

- 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산정하되, 해당 소권역 내 국가 측정망의 최근 3년간의 오염도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 ⑧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기존 오염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측정 지점은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만족하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
- 2. 측정 항목은 분석 대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 질 및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포함할 것
-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 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 4.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측정하되, 대상 항목별 구체적인 측정 기간 및 주기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를 것. 다만,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측정값이「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 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 6. 산출된 결과값이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 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항목, 기간, 주기, 정확 도·정밀도의 확인 및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측정·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 제10조(추가 오염도) ①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역 대기에서 확산되었을 때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용점에서의 농도 증가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②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③ 신청자는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마련하여 제공하는 가우시안 확산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 외의 대기질 예측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는 예측 모델링 기법의 종류 및 입력 자료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⑥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4)마)에서 추가 오염도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나. 영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 경우로서 추가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외의 지역에 서 영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제11조(총 오염도) ①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을 거치면서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이저감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5호, 2017.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제3조 관련)

-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 가. 기본 분석정보
 - 1) 대상지역
 - 가) 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 나) 대상지역의 범위
 - 다) 대상지역의 지형
 - 라) 수용점의 배치
 - 2) 환경기준 및 환경의 질 목표수준
 - 3) 기존 오염도
 - 가) 오염물질별 기존 오염도의 산정
 - 나) 기존 오염도 산정 근거
 - 4) 기상 정보
 - 가) 기상 정보의 산정
 - 나) 기상 정보 산정 근거
 - 5) 오염물질 배출 정보
 - 나. 배출영향의 분석
 - 1) 간이분석 결과
 - 2) 최대배출기준 농도 적용시의 추가 오염도
 - 가) 오염물질별 추가 오염도의 산정
 - 나) 추가 오염도 산정 근거
 - 3) 최대배출기준 농도 적용시의 총 오염도
 - 가) 오염물질별 총 오염도의 산정
 - 나) 총 오염도 산정 근거
 - 다. 허가배출기준안
 - 라. 예상 배출영향(예상 배출농도 적용시의 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

-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 가. 기본 분석정보
 - 1) 대상지역
 - 가) 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 나) 수용하천등의 현황
 - 다) 배출시설 유형
 - 2) 환경기준 및 환경의 질 목표수준
 - 3) 기존 오염도
 - 가) 오염물질별 기존 오염도의 산정
 - 나) 기존 오염도 산정 근거
 - 4) 하천유량 정보
 - 가) 유량 정보의 산정(저수기, 평수기)
 - 나) 유량 정보 산정 근거
 - 5) 오염물질 배출 정보
 - 나. 배출영향의 분석
 - 1) 간이분석 결과
 - 2) 최대배출기준 농도 적용시의 추가 오염도
 - 가) 오염물질별 추가 오염도의 산정
 - 나) 추가 오염도 산정 근거
 - 3) 최대배출기준 농도 적용시의 총 오염도
 - 가) 오염물질별 총 오염도의 산정
 - 나) 총 오염도 산정 근거
 - 다. 허가배출기준안
 - 라. 예상 배출영향(예상 배출농도 적용시의 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

[별표 2]

수용점 배치 방법(제5조제3항 관련)

- 1. 수용점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에 따른 대상지역 내에서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배치한다.
- 2. 수용점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간격으로 한다.
- 가. 사업장 부지 경계선상: 50 m
- 나. 사업장 경계로부터 2 km 미만의 지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영역: 100 m
- 다. 사업장 경계로부터 2 km 이상 10 km 미만의 지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영역: 500m
- 라. 그 밖의 영역: 1 km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용점의 배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배치간격의 조정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 외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서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예상되는 배출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 간격을 달리해야 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다. 수용점을 배치하는 지점이 주거지가 없는 산지, 해양 등에 위치한 경우로서 예상되는 배출영향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하천유량의 추정 방법(제7조제1항 관련)

- 1.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폐수가 수용하천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지점의 상류 지역의 자료를 하천유량 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배출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상 배출지점의 하류 지역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2. 배출시설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는 지점의 상류 지역의 자료를 사용한다.
- 3. 배출지점 상류의 하천에 다른 배출시설의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로서 그 배출지점 상류 지역의 자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하천유량을 산정할 때에 해당 폐수로 인한 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3조에 따른 배출영향분 석 결과서에 하천유량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배출지점 상류의 하천이 분기되거나 합류되는 경우로서 분기 또는 합류되는 지점 의 상류의 자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하천유량을 산정할 때에 분기 또는 합류로 인한 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3조에 따른 배출영향분 석 결과서에 하천유량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제1호 단서에 따라 하류 지역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하류 하천에 다른 배출시설의 폐수가 배출되거나 하류 하천이 분기 또는 합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지점 또는 분기·합류지점 상류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제5호에 따른 다른 배출시설의 폐수 배출지점 또는 하천의 분기·합류지점 하류의 자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 또는 분기·합류로 인한 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하천유량을 산정하되,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4]

오염물질 배출 정보의 산정 방법(제8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구 분	산정 방법
가. 굴뚝 위치	○ 지표면 상에서 굴뚝의 위치를 X, Y 좌표로 표 시한다.
나. 굴뚝 높이	○ 배출가스의 유량 및 온도, 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구의 내경 등을 고려하여 굴뚝 높이의 설 계값을 산정한다.
다. 배출구의 형상 및 면적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따른 배출 구의 형상 및 면적을 산정한다.
라. 배출가스의 속도 및 유량, 온도	○ 시설·공정의 특성 및 사용 연료·원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의 속도 및 유량, 온도 의 설계값을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 영중인 배출시설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정상가 동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속도 및 유량, 온도를 산술 평균한 값을 활용할 수 있다.
마.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 시설·공정의 특성 및 사용 연료·원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설계값을 산정한다. 다만, 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라 허 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배출영향분석 을 하는 때에는 허가배출기준안을 배출 농도로 사용한다.
바. 오염물질의 배출량	○ 라목에 따른 배출가스의 유량과 마목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곱한 값으로 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구 분	산정 방법
가. 배출지점의 위치	○ 배출된 오염물질이 방류하천등으로 합류되는 지점의 위치를 산정한다.
나. 오염물질 배출 방식	○ 방류하천등에 직접 배출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한 간접 배출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방식을 표시한다.
다. 폐수배출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폐수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의 경우는 최 근 3년간 정상가동 상태에서의 폐수배출량을 산술 평균한 값을 활용할 수 있다.
라.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 시설·공정의 특성 및 사용 연료·원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설계값을 산정한다. 다만, 규칙 별표 6 제3호에 따라 허 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배출영향분석 을 하는 때에는 허가배출기준안을 배출 농도로 사용한다.
마. 오염물질의 배출량	○ 다목에 따른 폐수배출량과 라목에 따른 오염물 질의 배출 농도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5]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 추정 방법(제9조제2항 관련)

- 1. 대상지점의 기존 오염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변 지점의 자료는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자료 중 대상지점으로부터 반경 100 km 이내에서 측정·조사·분석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외할수 있다.
- 2. 대상지점의 기존 오염도는 제1호에 따른 자료로부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값으로 한다.

기존 오염도 =
$$\left(\sum_{i=1}^n Z_i \times \frac{1}{d_i^2}\right) / \left(\sum_{i=1}^n \frac{1}{d_i^2}\right)$$

비고

- 1. Z_i 는 i번째 관측지점에서의 기존 오염도 관측값을 말한다.
- 2. d_i 는 i번째 관측지점으로부터 대상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3. n은 관측지점의 개수를 말한다.

[별표 6]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시간대별 추가 오염도 산정 방법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 방법	
1. 연간 평균치	가. 각 수용점에서 분석 대상 연도의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3시까지 시간대별로 산출된 추가 오염도를 산술 평균하여 수용점별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수용점별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 중 가장 큰 값을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로 한다.	
2. 24시간 평균치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시간대별 추가 오염도를 24시간 단위 (매 0시부터 23시까지를 말한다)로 산술 평균하여 24시간 단위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가목에서 산정된 24시간 단위 평균치의 99백분위수를 수용점별 추가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로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수용점별 추가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로 한다. 가장 큰 값을 추가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로 한다. 	
3. 8시간 평균치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시간대별 추가 오염도를 8시간 단위 (매 0시부터 7시, 8시부터 15시, 16시부터 23시까지를 말한다)로 산술 평균하여 8시간 단위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가목에서 산정된 8시간 단위 평균치의 99백분위수를 수 용점별 추가 오염도의 8시간 평균치로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수용점별 추가 오염도의 8시간 평균치로 한다. 가장 큰 값을 추가 오염도의 8시간 평균치로 한다.	
3. 1시간 평균치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시간대별 추가 오염도의 999천분위수를 수용점별 추가 오염도의 1시간 평균치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수용점별 추가 오염도의 1시간 평균치 중가장 큰 값을 추가 오염도의 1시간 평균치로 한다.	
4. 30분 평균치	○ 제3호에 따른 1시간 평균치의 산정방법을 따른다.	

[별표 7]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 산정 방법(제10조제5항 관련)

1. 수질오염물질을 하천에 배출하는 경우

비고

- 1. 총 오염도는 별표 10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말한다.
- 2. 기존 오염도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하천의 기존 오염도를 말한다.
- 2. 수질오염물질을 호소에 배출하는 경우

비고: 오염물질 배출 농도는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말한다.

[별표 8]

추가 오염도 산정의 면제 기준(제10조제6항 관련)

- 1. 각각의 배출구에서 최대배출기준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산정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을 면제한다.
 - 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오염물질의 장기 추가 오염도가 해당 오염물질의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장기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장기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는 규칙 제16조에 따른 장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사용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장기 추가 오염도 =
$$\sum_{\text{모든 배출구}}$$
 (배출량) \times (장기 확산계수)

비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의 단위는 초당 그램(g/s)으로 한다.

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오염물질의 장기 총 오염도 및 단기 총 오염도가 각각 해당 오염물질의 장기 환경기준 및 단기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단기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는 규칙 제16조에 따른 단기 환경의 질 목표수준을 사용 한다) 이하인 경우

장기 총 오염도 = 기존 오염도 +
$$\sum_{\text{모든 배출}7}$$
 (배출량) \times (장기 확산계수)

단기 총 오염도 = 기존 오염도 +
$$\sum_{\text{모든 배출} 7}$$
 (배출량) \times (단기 확산계수)

비고: 기존 오염도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장기 추가 오염도, 장기 총 오염도 및 단기 총 오염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기 확산계수 및 단기 확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別えコ しん()	확산계수(µg/m³/g/s)	
배출구 높이(m)	장기(연평균)	단기(1시간 평균)
0	148	3,900
10	32	580
20	4.6	161
30	1.7	77
50	0.52	31
70	0.24	16
100	0.11	8.6
150	0.048	4.0
200	0.023	2.3

[별표 9]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시간대별 총 오염도 산정 방법

(제11조제1항 관련)

총 오염도 = 추가 오염도 + 기존 오염도

비고

- 1. 추가 오염도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균 시간대별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말한다.
- 2. 기존 오염도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말한다.
- 3.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평균 시간대별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각 평균 시간에 대한 추가 오염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 산정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수질오염물질을 하천에 배출하는 경우

총 오염도 =
$$\frac{($$
하천유량 \times 기존 오염도 $)$ + (폐수배출량 \times 배출농도 $)$ 하천유량 + 폐수배출량

비고

- 1. 하천유량은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하천유량을 말한다.
- 2. 기존 오염도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하천의 기존 오염도를 말한다.
- 3. 폐수배출량은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말한다.
- 4. 배출농도는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말한다.
- 5.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유량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기 유량과 평수기 유량 사이에서 모의 표본추출법에 따라 산정된 1,000개의 하천유 량값과 기존 오염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모의 표본추출법에 따라 산정된 1,000개의 기존 오염도값을 활용하여 총 오염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오염도는 1,000개의 유량값과 기존 오염도값을 활용하여 산정된 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수질오염물질을 호소에 배출하는 경우

총 오염도 = 추가 오염도 + 기존 오염도

비고

- 1. 추가 오염도는 별표 7 제2호에 따른 추가 오염도를 말한다.
- 2. 기존 오염도는 제9조제5항에 따른 호소의 기존 오염도를 말한다.

[별표 11]

수질오염물질의 저감효과 고려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에 따른 호소에서의 추가 오염도 또는 별표 10 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의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배출농도 대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저감 배출농도를 사용한다.

저감 배출농도 = 배출농도 × 저감계수

2. 제1호에 따른 저감계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 방법별로 다음과 같다.

हो प		저감계수	
	항목	활성슬러지법	살수여상법
1	비소	0.8900	0.8900
2	벤젠	0.0000	0.0200
3	사염화탄소	0.0500	0.0400
4	클로로포름	0.0900	0.0100
5	크롬	0.1600	0.5200
6	구리	0.1600	0.5100
7	시안	0.3200	0.3200
8	1,2-디클로로에탄	0.6596	0.6596
9	플로오르(불소)	0.5000	0.5000
10	납	0.1800	0.8000
11	수은	0.2400	0.4400
12	디클로로메탄	0.0550	0.1000
13	페놀류	0.1700	0.1700
1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400	0.0500
15	염화비닐	0.0340	0.0340

_			
16	아연	0.1900	0.5700
17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0.0500	0.1000
18	나프탈렌	0.0000	0.0800
19	니켈	0.6600	0.5300
20	PCB	0.0200	0.1553
21	톨루엔	0.0000	0.0400
22	트리클로로에틸렌	0.2042	0.2042
23	자일렌	0.0000	0.0650

비고: 표에서 저감계수를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계수는 1,0000으로 한다.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6호, 2017.1.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통합관리사업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을 말한다.
- 2. "환경관리 수준 평가"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제3조(평가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등을 검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다.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통합 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재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변경할수 있다.
- ④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을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평가 요소 및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평가 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평가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 한다)를 평가하여 평가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평가 분야별 평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1호라목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법 제10조제

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준수 현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기 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이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에 수록된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및 그 밖에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환 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5조(평가단의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야 한다.

-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단의 단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생활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 2. 환경부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 3. 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 소속 전문가
-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제3조제4항에 따

라 기존 사업장이 희망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오염물질 배출수준 개선노력 및 유해한 오염물질 등 취급·관리 현황
- 2.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 현황 및 개선사항
- 3. 측정·모니터링과 주변 영향조사 현황 및 결과 등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등을 검토할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 자료가 접수되면 법령위반, 환경오염 사고 및 피해,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수준, 자가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법 제29조의 환경전문심사원에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자료의 적합성

- 을 사전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 여부 및 평가일 정 등을 통합관리사업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대기와 수질의 자가측정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 전에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채취·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1의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별로 별표 2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서를 작성한다.

제3장 사후관리 등

- 제7조(평가결과)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 토주기를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 서에 기재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명세서가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별 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가 요소별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 제8조(검토주기 연장 철회)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확정되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혹은 개선명령을 처분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규칙 별표 14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증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2. 「폐기물관리법」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영업 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 3. 「화학물질관리법」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 4. 「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 5. 「환경영향평가법」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 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내용 및 사유, 허가조건 등의 검토 계획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기업비밀보장) 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사업장의 비밀보 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 종결 후 대상 사업장이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상 사업장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자료를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6호, 2017.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1.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분야

가. 허가배출기준 대비 오염물질등 배출 농도의 수준

세부 평가내용	평가등급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허가배출기준의 30% 이하	우수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허가배출기준의 50% 이하	양호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허가배출기준의 50% 초과	보통

-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잔류성 등 해당 매체별 가중치는 평가단에서 사업장 주변 수용체 인접 여부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
- * 다만, 수질의 경우 무방류·전량 재이용은 0% 배출로, 위탁·연계처리는 평가제외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세부 평가내용	평가점수
• 특정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목록수 및 배출량 저감 노력 등	등급 1단계 조정가능

다. 유해한 오염물질등 취급·관리 수준

세부 평가내용	평가점수
지정폐기물 관리현황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 및 설비 등 개선 유해물질 유해성 파악 및 자료관리(MSDS) 현황 비산배출 및 비점오염 저감 조치현황 완충저류조 설치 등 오염사고 및 환경사고 대비 현황 등	등급 1단계 조정가능

2.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 적용 분야

세부 평가내용	평가등급
■ 해당 시설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적용률 90% 이상	우수
• 해당 시설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적용률 80% 이상	양호
■ 해당 시설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현장적용률 80% 미만	보통
▪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의 신규 도입, 시설개선 등	등급 1단계 조정가능

3. 법령위반 및 환경사고 분야

세부 평가내용	평가등급
•위반 건수가 없고, 사고 및 피해 건수 없음	우수
• 위반 건수가 2건 이하이고, 사고 및 피해 건수가 2건 이하	양호
•그 외의 경우	보통
*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 후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	등급 1단계 조정가능

4. 측정·모니터링 분야

가. 측정·모니터링 적절성 등

세부 평가내용	평가등급
대기오염방지시설 전단측정 여부, 원폐수 분석 주기	우수
• 허가조건 항목·주기·지점 외에 추가 측정 여부 • 사업장에서 환경에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 여부 및 적정성	양호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비산배출) • 측정·모니터링결과와 시설 운전 중요항목 동시 기재 여부	보통
▪ 측정 • 모니터링 노력수준(정확도, 난이도 등)	등급 1단계 조정가능

나. 측정·모니터링의 신뢰성

세부 평가내용	평가점수
■ 측정검사값이 자가측정에 따른 분포의 95% 신뢰구간	측정 • 모니터링 적절성
범위 이내에 위치	등급 그대로 유지
■ 측정검사값이 자가측정에 따른 분포의 95% 신뢰구간	측정 • 모니터링 적절성
범위 밖에 위치	등급 하향 가능

[별표 2]

환경관리 수준 평가서

결정번호							
사업장명			대표지				
사업장 규모	대기	업		중소기	업 🗌		
	1. 오염물질 비	H출수준등					
평가결과	2. 최적가용기	법 적용수준					
정기설과	3. 법령위반 및	및 환경사고					
	4. 측정·모니	터링					
검토주기				년			
평가의견							
평가위원		공정하게 평가하였을 기부에 비밀을 유지히		하게 심	사하였		
	성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 화번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7호, 2017.1.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운영 및 정보의 공개 여부 심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심의의 기본원칙)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 1.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 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영 제32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 의결의 효력) 위원회의 의결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신청이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명 및 정보의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① 영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으로 추천한 날로부터 새로운 위원을 추천한 날까지로 한다.
 - ②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간사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위원이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영 제29조제1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서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심의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대리출석자는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대리출석자의 성명 등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정보보 호요청을 신청한 사업장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

- 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의 준비)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일시·장소의 결정 등의 회의 준비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 위원이 담당한다.
 - ②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의명
- 2. 회의개최일시
- 3. 회의장소
- 4. 참석자 명단
- 5. 심의안건
- 6. 회의내용
- 7. 사업장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
- 8.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간사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보보호요청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3조(정보의 공개여부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최종 결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 2.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 게 통지한 경우 : 해당 정보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 ②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심의기 준에 따라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심의일 7일 전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하기로 결정 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대표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 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결 과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계획과 소명절차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소명 및 재심의) ① 공개대상자가 제13조제6항의 통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비공개 정보의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정보보호요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계속 해당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는 영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17호, 2017.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환경관리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요청 심의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기업의 "영업 비밀"에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공개 여부를 심사 한다.

- 1.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와 정보보호를 요청한 통합환경관리정보를 공개 함으로서 발생되는 공익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가.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 헌법기 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를 의미한다.
- 나. "질서유지"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외에 사회적 안녕질서를 의미한다.
- 다. "공공복리"란 공공의 행복과 이익으로서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사적 이익에 우월하면서 개개인의 공통된 이익을 의미하는 국민공동의 공공복리를 의미한다.
- 2.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용성)를 의미하며, "거래경쟁상 지위" 또는 "기타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 가. "비공지성"이란, 정보가 출판물,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나. "경제성"이란, 비공개 신청자가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다. "비밀관리성"이란, 비공개 신청정보가 해당 관리업체의 종업원 또는 외부 제3 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유용성"이란,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객관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의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며, 요건과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 바. 영업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경쟁상 지위"와 "기타 정당한 이익"은 나호 "경제성"요건과 라호 "유용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 "거래경쟁상 지위"란 관련 정보의 보호를 요청하는 해당 사업장의 공정한 경쟁 관계에서의 지위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제조, 판매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 보다 우월한 지위 등이 포함된다.
- 아. "기타 정당한 이익"이란 노하우, 신용 등 관련 정보의 보호를 요청하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상 이익을 포함하여, 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보호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의미한다.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
- 가. 해당 정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서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
- 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와 관련되어 다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г			г		
		29 ر 7 ر	•		
		•			
				(\
				(,
1					
	→	→		→	
				210mm × 297mm[80a/m²1

[3] [별지 제2호서식] 비공개 의견 제출서 경 부 () () 1. ^r 」 27 5 가 () () 」 32 2 г J 13 3 2. 가 4 ر 30 г J 14 1 (/) / (/) / (/) 1. 2.

210mm×297mm[백상지 80g/m²]

() () /

80g/m²]

210mm × 297mm [

3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소명서

()		
()		
()	,	
		(:)
г ,		ع 27 4 ^ر 14	
			()

1. 2. 3. [별지 제5호서식]

			-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					
	()			(:)
			[]	[]		[]	
г				1	27 4 г 」 14 3		
] 14 0		

 $210mm \times 297mm[80g/m^2]$

210mm × 297mm[

80g/m²]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8호, 2017.1.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운영 등

- 제2조(환경전문심사원 지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4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제3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① 제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전 문심사원의 장(이하 "환경전문심사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환경전문심사원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사할 때에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환경전문심사원장은 환경전문심사원의 구성원이 법 제29조제1 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환경전문심사원장은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전문심사원 관리 : 감독 등

제4조(관리·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전 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1. 검토 인력의 전문성
- 2.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절성
- 3.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 4. 그 밖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에게 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18호, 2017.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48호, 2017.3.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각각 별표와 같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48호, 2017.3.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계배출기준의 유효기간) 제2조에 따른 한계배출기준 중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과 폐기물 소각시설의 한계배출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한계배출기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부장 관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한계배출기준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계배출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배출기준은 한계배출기준의 효력이 종료된 당시의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한다.

[별표]

한계배출기준(제2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 한다.
 - 1)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종 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60			
황산화물(SO2)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0			
질소산화물(NO ₂)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2) 폐기물 소각시설(영 별표 1 제3호의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40
황산화물(SO ₂)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50
질소산화물(NO2)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5
일산화탄소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90

비고

- 1.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이 가목1) 또는 2)에 따라 산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 법」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한다)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70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2. 수질오염물질

- 가.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 및 배출시설의 종류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적용을 받는 시설: 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농도기준
 - 2) 1) 외의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6)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 나. 규칙 별표 15 제3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가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최대배출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 으로 한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05호, 2017.6.2,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외시설) ① 영 별표 4 제2호마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는 시설
 - 2.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 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 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4.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다 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 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수하는 시설
- 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수하는 시설
- ② 영 별표 4 제2호바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란 법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2.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3.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

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4.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5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5.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7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6.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6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시설
- ③ 영 별표 4 제2호사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처음으로 고시할 당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2.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역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105호, 2017.6.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44호, 2017.9.1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산시스템 입력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입력의 담당자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 제28조에 따른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 등을 입력하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담당자 및 전산 입력장치(데스크톱,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를포함한다)를 지정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려야하며, 담당자 및 전산 입력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한다.이 경우 전산입력의 담당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

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하는 사업장 사용자 매뉴얼을 따른다.

제3조(전산입력 항목, 방법 및 주기) ①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등의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산입력 항목 중 법 제19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수질자동 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항목은 제외하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항목의 경우는 동 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44호, 2017.9.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제3조제1항 관련)

- 1. 자가측정 결과
 -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입력항목: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의 입력 항목 중 운영기록 매뉴의 자가측정사항
 - 2) 작성주기 :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설정된 측정횟수에 따른 주기
 - 3) 입력기간 : 측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입력항목 : 배출구별 오염물질명, 배출농도, 폐수 배출량
 - 2) 작성주기 :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설정된 측정횟수에 따른 주기
 - 3) 입력기간 : 측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입력항목: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중 운영기록 매뉴의 모든 항목 (자가측정사항 제외)
 - 2) 작성주기 : 매일(운영기록 메뉴 중 사용량 항목은 매월)
 - 3) 입력기간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사용량 항목은 다음 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입력항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및 제20호서식의 항목
 - 2) 작성주기 : 매일
 - 3) 입력기간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다.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 1) 입력항목 : 규칙 별표 10 제2호바목에 따른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 2) 작성주기 : 허가조건에 설정된 주기
- 3) 입력기간 : 점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에 한함)
- 1) 입력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 2) 작성주기 : 매월
- 3) 입력기간 : 검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마.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 1) 입력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5서식 작성항목
- 2) 작성주기: 허가조건에 설정된 주기 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주기
- 3) 입력기간 : 점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바.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소음·진동배출지설이 설치된 경우
- 1) 입력항목 : 규칙 별표 12에 따른 소음 · 진동 측정결과
- 2) 작성주기 : 허가조건에 설정된 주기
- 3) 입력기간 : 측정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사. 법 제2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 1) 입력항목 : 규칙 별표 12에 따른 악취 제거 약품 구매량 및 사용량
- 2) 작성주기: 매월
- 3) 입력기간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아.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 1) 입력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 2) 작성주기: 매월
- 3) 입력기간 : 점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1) 입력항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작성항목
- 2) 작성주기 : 강우시 또는 허가조건에 설정된 주기
- 3) 입력기간 : 점검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3.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 가. 입력항목 : 허가조건 내용, 일시, 이행사항, 측정·조사, 보고서 등
- 나. 작성주기 : 허가조건에 따른 작성주기 또는 허가조건에 따른 사항 이행시
- 다. 입력기간 : 작성일의 다음 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